

2016



第三十二輯

治安論叢

警察大學 治安政策研究所

총 목 차

◆ 횡단보도 설치 기준에 관한 연구	1
◆ 민간 과학수사 교육의 가이드라인 제시에 관한 연구	47
◆ 성폭력범죄 대응을 위한 경찰과 사회서비스직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145
◆ 분노·충동범죄 판별연구	269
◆ 사회연결망분석을 활용한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협력네트워크 강화방안	387

사회연결망분석을
활용한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협력네트워크 강화방안

《研究陣》

책임연구자 : 정 육 상 (계명대학교)

박 주 상 (목포해양대학교)

치안정책연구소

••• 목 차

제1장 서 론	39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395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97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399
제1절 범죄피해자 보호의 이론적 논의	399
1. 범죄피해자의 개념	399
2. 보호 및 지원의 대상으로서 범죄피해자	400
3. 범죄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현황	402
제2절 사회연결망 이론	422
1. 사회연결망의 개념	422
2. 사회연결망의 종류	423
3. 사회연결망 분석에 대한 접근 방식	424
4. 사회연결망 분석의 측정 지표	425
제3장 연구의 설계	431
제1절 연구의 모형	431
제2절 조사의 설계	432
1. 조사대상 기관의 선정	432
2. 자료수집 방법 및 분석도구	432
제3절 분석의 기준	433
제4장 분석의 결과	436
제1절 강력범죄피해자 보호의 사회연결망 분석	436
1. 강력범죄피해자 보호의 사회연결망 밀도	437

2. 강력범죄피해자 보호의 사회연결망 연결중심성	438
3. 강력범죄피해자 보호의 사회연결망 인접중심성	439
4. 강력범죄피해자 보호의 사회연결망 매개중심성	440
5. 강력범죄피해자 보호의 사회연결망 위세중심성	442
제2절 성폭력 범죄피해자 보호의 사회연결망 분석	443
1. 성폭력 범죄피해자 보호의 사회연결망 밀도	443
2. 성폭력 범죄피해자 보호의 사회연결망 연결중심성	444
3. 성폭력 범죄피해자 보호의 사회연결망 인접중심성	445
4. 성폭력 범죄피해자 보호의 사회연결망 매개중심성	446
5. 성폭력 범죄피해자 보호의 사회연결망 위세중심성	447
제3절 가정폭력 범죄피해자 보호의 사회연결망 분석	449
1. 가정폭력 범죄피해자 보호의 사회연결망 밀도	449
2. 가정폭력 범죄피해자 보호의 사회연결망 연결중심성	450
3. 가정폭력 범죄피해자 보호의 사회연결망 인접중심성	451
4. 가정폭력 범죄피해자 보호의 사회연결망 매개중심성	453
5. 가정폭력 범죄피해자 보호의 사회연결망 위세중심성	454
제4절 학교폭력 범죄피해자 보호의 사회연결망 분석	456
1. 학교폭력 범죄피해자 보호의 사회연결망 밀도	456
2. 학교폭력 범죄피해자 보호의 사회연결망 연결중심성	458
3. 학교폭력 범죄피해자 보호의 사회연결망 인접중심성	459
4. 학교폭력 범죄피해자 보호의 사회연결망 매개중심성	460
5. 학교폭력 범죄피해자 보호의 사회연결망 위세중심성	461
제5절 전반적 범죄피해자 보호의 사회연결망 분석	463
1. 전반적 범죄피해자 보호의 사회연결망 밀도	463
2. 전반적 범죄피해자 보호의 사회연결망 연결중심성	464
3. 전반적 범죄피해자 보호의 사회연결망 인접중심성	466
4. 전반적 범죄피해자 보호의 사회연결망 매개중심성	467
5. 전반적 범죄피해자 보호의 사회연결망 위세중심성	469

제5장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협력네트워크의 개선방안	471
제1절 범죄피해자 보호 협력네트워크상에서 역할 확대	471
제2절 범죄피해자 보호 협력네트워크 상의 협력대상	473
제3절 범죄피해자 보호 협력네트워크에서 경찰의 경찰	477
제6장 결 론	480
제1절 연구의 시사점	480
제2절 연구의 한계	481
참 고 문 헌	482
설 문 지	490

••• 표 목 차

〈표 1〉 범죄피해자 보호 협력기관 이해관계자의 네트워크 분석 개념	435
〈표 2〉 강력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 기술통계량	437
〈표 3〉 강력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 연결정도의 중심성	439
〈표 4〉 강력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 인접중심성	440
〈표 5〉 강력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 매개중심성	441
〈표 6〉 강력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 위세조직 순위	442
〈표 7〉 성폭력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 기술통계량	443
〈표 8〉 성폭력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 연결정도의 중심성	445
〈표 9〉 성폭력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 인접중심성	446
〈표 10〉 성폭력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 매개중심성	447
〈표 11〉 성폭력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 위세중심성	448
〈표 12〉 가정폭력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 기술통계량	449
〈표 13〉 가정폭력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 연결정도의 중심성	451
〈표 14〉 가정폭력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 인접중심성	452
〈표 15〉 가정폭력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 매개중심성	454
〈표 16〉 가정폭력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 위세중심성	455
〈표 17〉 학교폭력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 기술통계량	456
〈표 18〉 학교폭력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 연결정도의 중심성	458
〈표 19〉 학교폭력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 인접중심성	459
〈표 20〉 학교폭력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 매개중심성	460
〈표 21〉 학교폭력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 위세중심성	461
〈표 22〉 범죄피해자 보호의 협력네트워크 기술통계량	463
〈표 23〉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 연결정도의 중심성	465

〈표 24〉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 인접중심성	466
〈표 25〉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 매개중심성	468
〈표 26〉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 위세중심성	469
〈표 27〉 범죄유형별 인접중심성	474

••• 그림 목 차

〈그림 1〉 연결망의 형태와 개념	427
〈그림 2〉 결점의 중앙성	428
〈그림 3〉 연구의 분석모형	431
〈그림 4〉 강력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	438
〈그림 5〉 성폭력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	444
〈그림 6〉 가정폭력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	450
〈그림 7〉 학교폭력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	457
〈그림 8〉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	464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헌법 등에서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활동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범죄피해자를 빠른 시간 내에 일상생활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형사사법기관이나 국가기관의 활동만으로는 부족하다.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적 지원네트워크 구축은 현재의 피해자 지원시스템에서는 적지 않은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2000년대부터 피해자 관련 중앙정부 부처의 개별적인 피해자지원 대책에 따라 급격하게 피해자지원 기관 및 단체가 설치되었고, 이로 인해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기관 및 단체들이 난립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지원서비스의 중복제공, 산만한 운영, 피해자가 접근하기에 복잡하고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하여 범죄피해자에게는 지원제도의 혼란을 야기 시키고, 다양한 협력 관련 기관 및 단체들 사이에서도 각 중앙정부 부처의 계획에 따라 이해관계가 얽히고 있으며, 유사한 성격의 기관들까지도 그 운영에 있어 다른 양상을 띠기도 한다.

최근 경찰에서는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대해 기존의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지원체계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유형의 범죄피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설된 ‘피해자보호담당관실’을 통해 피해자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유관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15년 3월 13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교통안전공단, (사)손해보험협회, (사)한국피해자지원협회의 유관기관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MOU체결을 하였고, 강신명 경찰청장은 협약식 행사에서 “범죄피해 발생 후 피해자가 가장 먼저 접촉하는 경찰단계가 피해자 보호·지원의 골든타임이며,

피해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 뿐 아니라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기관별로 산재해 있는 피해자 지원제도가 이번 협약을 통해 종합적으로 연결돼 보다 세밀하고 빈틈없는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밝힌바가 있다(2015. 3. 13. 뉴스한국; 헤럴드경제). 경찰조직 창설 70주년인 금년을 ‘범죄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하면서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업무가 가능하도록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협력네트워크는 통합적인 지원시스템으로서 지역사회의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한 유관단체들을 촘촘히 연계한 연결망 구축하고, 이를 통해 범죄피해자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다양한 전문적인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에 있어 협력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필요한 요소들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부터 윈스톱 혹은 통합적인 지원 체계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백일홍, 2014: 4). 하지만 지금까지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관련 연구는 주로 경찰수사상의 피해자의 인권침해에 집중되어 연구되어 왔다(김용세·김재민, 2006; 장규원, 2005; 박주상, 2004; 김재민, 2003; 정현미, 2000). 이러한 연구에서는 경찰로 인한 2차 피해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왔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통합적인 지원체계가 지원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단순한 주장에 멈추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함에 있어서 그 필요성과 기능, 체계적 구성요소, 범위, 방향, 구축 모형 등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였다(백일홍, 2014: 4). 따라서, 지역사회 중심의 범죄피해자 보호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관련 협력기관들과의 관계 및 필요한 역할 등에 대해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협력네트워크 구축이 기존의 유관기관 간의 MOU체결을 통한 업무협조 요청체계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협력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에 있어서 관련 이해관계자들 간

의 상호작용을 통한 협력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범죄피해자 보호 협력활동 영역별로 파악해 볼 것이다. 여기서 이해관계자들간 상호작용은 사회연결망분석 기법을 이용하며 그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밀도와 연결중심성, 인접중심성, 매개중심성, 위세중심성 등의 지표를 사용한다.

둘째, 각 범죄유형별 네트워크에서 경찰의 위치를 도출하고 그 역할에 논하여 보고자 한다. 사회연결망분석 기법을 통하여 경찰의 구조적 위치를 면밀히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경찰의 역할에 대해 논하여 보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첫째, 문헌연구를 실시한다. 분석의 틀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세우기 위하여 문헌 연구를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와 경찰의 역할, 그리고 네트워크 이론에 대해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고찰을 한다.

둘째, 사전조사와 본조사를 실시한다. 이 연구에서 주요 개념을 도출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발표된 이론적·실증적 연구문헌을 대상으로 문헌연구를 실시하며,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 인터뷰를 실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본조사를 실시한다.

셋째, 사회연결망 분석을 실시한다. 주요 연구목적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 이들 간의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찰의 위치를 파악하여, 앞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 수행을 위한 제언을 도출한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연구조사 시점인 2015년 8월~9월로 한다. 둘째, 연구의 대상적 범위는 문헌고찰과 경찰공무원들의 심층면접을 통해 도출된 협력기관을 중심으로 눈덩이샘플링(snowballing sampling)을 통해 대상을 선정한다. 셋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경찰과 범죄피해자 보호 관련 협력하고 있는 이해관계기관의 상호작용 관계와 그 안에서 경찰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으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있어서 이해관계자 네트워크에서 경찰의 위치를 조명하여,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할 경찰의 발전적 역할을 제시하며, 협력네트워크의 의미와 지향점, 그리고 필요한 구성요소들을 구조모형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기관 중심, 피해자 중심, 서비스 중심의 네트워킹 특징들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통해 적합한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방향을 찾아보는 것이다.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제1절 범죄피해자 보호의 이론적 논의

1. 범죄피해자의 개념

범죄피해자의 개념을 살펴보기에 앞서 피해자에 대해 살펴보면 피해자는 라틴어 'Victim'에서 유래되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고대 사회에서는 신을 위해 제사에 바쳐진 사람 또는 동물로서 종교적인 의미를 가졌으며 '희생'의 개념에 근거를 두었다. 그 후, 또 다른 의미가 추가되어 현재 이해되는 개념인 다른 이유로 인해 상해, 손실 또는 고난을 겪는 사람으로 이해된다(백일홍, 2014: 6).

세계적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시초는 1985년 UN의 '범죄피해자 및 권력남용의 피해자를 위한 사법의 기본원칙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f Basic Principles of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Power)'이다.

UN 범죄피해자 인권보호선언에서는 '피해자'를 범죄피해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범위에 있어서는 형사상 절차의 진행과 상관없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의 가족이나 도와주려다 피해를 당한 사람까지 모두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다. 단, 직접적인 피해자로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칭하고 있다(백일홍, 2014: 7).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에 의하면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명시하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관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피해자의 개념은 범죄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자 외에 간접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까지 피해자의 개념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박상식, 2006: 262).

이 외에도 경찰청훈령의 범죄피해자 보호규칙 제2조에서는 ‘피해자’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피해자를 의미하며 외국인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범죄피해자법(Victim of Crime Act U.S.C 10607(e) 2)은 피해자의 개념에 대해 범죄에 의해 직접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입은 자로 다음의 자를 포함한다. 피해자가 18세미만이거나 책임무능력자, 행위무능력자, 또는 사자인 경우에는 법률상의 후견인, 배우자, 양친자, 형제자매, 그 외의 가족 구성원, 법원이 지명한 그 외의 다른 자로 규정하고 있다(송기오·강경래, 2005: 43).

2. 보호 및 지원의 대상으로서 범죄피해자

피해자보호를 보호하는 것은 헌법 정신인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기본하고,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모든 조치이다. 또한, 피해자의 자립을 위해 재활을 지원하고 고통을 완화하는 등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범죄 피해자를 보호 하는 방향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의료적·사회적·심리적 지원 제공이며 사법절차에서의 피해자의 지위를 강화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등 이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장규원, 2011: 23; 백일홍, 2014: 10).

즉, 범죄로부터 형사절차상 보호의 의미와 그 외에 범죄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형사절차상 보호는 형사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피해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진술할 권리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한다. 특히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법기관이나 언론기관 등으로부터 보호하며, 그 외는 범죄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자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형사상의 절차 종료 후에는 범죄판결이나 수감과정 및 보호관찰 과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지원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향상을 위해 인권운동 및 사회활동을 실시한다.

피해자지원의 영문은 ‘support’, ‘assistance’, ‘service’ 등 다양한 표기로 지칭된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헌법 제30조의 범죄피해자 구조권 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

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이 법률에 의거해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는 기본권이다. 이를 바탕으로 1987년 11월 28일에 제정된 범죄피해자구조법은 피해자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에 의한 개념이며, 범죄피해로 인해 법률상 심한 부상을 입은 피해자나 사망한 자의 유족에게 국가가 일정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범죄피해로부터 구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범인이 도주하여 누군지 알 수 없거나 검거하였더라도 범인의 재산이 전혀 없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범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 금액으로 보상하는 것이다. 범죄피해구조에 대해 범죄피해자보호법으로 통합되면서 제16조부터 제32조까지 규정되어 있으며, 범죄행위를 유발하거나 방조·부정·용인한 행위를 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제19조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백일홍, 2014: 15).

한편, 피해자를 돕는다는 개념은 더 이상 범죄에 한정하지 않고 질병이나 자연재해 또는 빈부격차 등 사회적인 문제를 포함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 지원한다. 특히 인권이나 자연재해와 같은 도움을 준다는 의미로 ‘원조’의 개념이 사용한다. 스위스의 피해자원조법(Bundesgesetz über Hilfe an Opfer von Straftaten, OHG)은 범죄피해자에게 효과적 원조를 제공하고, 그 법적 지위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장규원, 2011: 34).

피해자에 대한 권리와 보호에 따라 피해자 지원의 의미와 유형이 달라지기도 한다. 기존의 응보적 차원에서는 형사사법절차상 사건의 규명과 가해자의 처벌이 중점이었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한다는 개념 최소한의 수단을 의미할 뿐이었다. 따라서 초기에는 민간단체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현재는 복지적 측면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피해자지원은 주체기관인 국가기관이나 민간단체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며, 지원 내용도 달라진다. 또한 피해자를 지원하는데 있어 형식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원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가 원하는 욕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전보다 더욱 더 피해자를 지원함에 있어서 그 방향도 공식적인 지원에서 비공식적인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백일홍, 2014: 17).

3. 범죄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현황

현재 우리나라에서 범죄피해자에게 지원하는 대표적인 형태는 법률적, 경제적, 주거지원, 신변보호, 상담서비스 제공, 의료적 등이 있으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기관은 성격에 따라 국가기관과 민간단체로 나뉘볼 수 있다. 국가기관에서 범죄피해자를 담당하는 곳은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범죄피해자 지원의 실질적인 활동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CARE요원이나 피해자 인권과, 스마일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원스톱지원센터, 각종 상담소 등 중앙행정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단체에 의한 운영은 국가와 달리 개인이나 임시단체에 의한 조직체로서 후원이나 기부로 이루어졌으며 운영비와 인건비 등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순수민간단체와 일부 국가의 보조와 후원과 기부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는 절충민간단체가 있다.

피해자대책에 있어서 가장 앞선 북미와 유럽에서는 먼저 이론적으로 피해자학에 대한 성과를 이루었으며, 민간단체들의 피해자지원활동이 널리 공감을 얻는 등 피해자보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이론적인 부분과 실천적인 토대가 마련되었고, 그 후 정부차원의 법제도 정비가 시작되었다. 1950년대 중반 이후에는 민간지원단체들이 주로 여성과 아동 피해자에 대한 피난처를 제공하였고 심리적 상담 또는 법률상담 등의 원조를 제공하면서 시작되었다(김용세, 2002: 26).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민간지원단체가 미비하고, 기존법상 형사소송법에서도 보호의 범위는 피해자학의 일반적 보호를 위한 제도에 비해서 아주 미흡한 수준이다. 또한, 자원봉사자의 활용이나 기부가 활성화 되지 않아 국가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난 기간 동안 많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체계를 구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상황에 대처하지 못해 피해자의 욕구를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난발하는 지원기관들의 운영에 의해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현재 피해자지원에 있어 운영되는 체계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해서 피해자지원 서비스공급 국가주체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단체의 피해자지원 공급주체에 따른 특징을 이해하도록 한다.

가. 중앙정부의 범죄피해자 지원 체계

국가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범죄로 인하여 국민이 피해를 받은 경우 이를 구제할 의무도 있다. 특히 배상명령에 의한 피해 자구제가 피고인이 무자력이거나 가해자가 불명인 때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기 때문에 국가에 의한 범죄피해자구조제도가 필요하게 된다(강동욱 외, 2013: 787). 현재 우리나라는 검찰과 경찰 내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부서를 두고 피해자들의 신분보호 및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1)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체계

경찰은 일반적으로 범죄사건에 대해 현장에서나 피해자의 신고로 가장 먼저 피해자와 접촉하게 된다는 점에 있어 범죄의 초기개입 등 보다 전문적인 범죄피해자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중요한 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경찰은 범죄에 대한 가해자의 발견, 체포, 증거수집 등의 범죄사건을 처리하는데 주력하다 보니, 피해자를 배려하는데 소홀하였고,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더 중점을 두었다.

2000년대 들어 국가 정책적으로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심을 갖게 되어 경찰조직도 이에 맞춰 피해자의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인권매뉴얼을 발간하고, 경찰청 수사국에 범죄피해자대책실을 개설하는 등 최근에 들어서야 피해자보호를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경찰이 본격적으로 피해자 지원에 나선 것은 2004년 8월 17일 경찰청훈령으로 「범죄피해자보호규칙」을 제정하였고 그해 9월부터 전국의 각 경찰서에 수사과 형사반별로 범죄피해자서포터를 지정하여 수사초기의 직접지원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경찰의 범죄피해자보호업무를 전담하는 제도를 운영하였으며, 2005년 2월에는 범죄피해자보호의 강화와 인권경찰상을 정립하기 위해 범죄피해자대책실을 인권보호센터도 확대하여 개편하고, 각 경찰서의 수사과장과 청문감사관을 인권보호 기관으로 지정하여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임국빈, 2006: 29).

같은 해 12월에는 서울에 위치한 경찰병원 내에 처음으로 윈스톱지원센터를 설립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법률·수사지원 연계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병원, 법률구조공단 등 여러 기관에 공조하여 이루어지

고 있다. 그 후, 2007년 3월에는 5개 지방경찰청 형사과 강력계에 피해자심리전문요원(CARE 요원)이 도입되었으며, 운영 초기에는 서울청과 경기청에는 형사과 강력계 배치되었고, 인천청과 대구청, 부산청은 수사과에 배치되었다(백일홍, 2014: 62).

이전의 범죄에 대한 규명과 가해자의 인권을 중시했던 경찰에게 범죄수사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것에 대한 관심은 점점 고조되고 있고, 경찰 자체적인 피해자지원 기구를 다양하게 구성할 만큼 확대되어 가고 있다.

(1) 피해자 보호 담당관실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회복 및 2차 피해 방지 등의 지원활동대안 업무내용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구축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업무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경찰청 훈령인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전담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또한, 경찰관 감사관 소속으로 피해자보호담당관을,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소속으로 피해자보호계를 운영함으로써 범죄피해자보호 전담체계로서 피해자보호 및 지원정책을 통일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청문감사담당관 또는 청문감사관을 피해자 대책관으로 두고(동법 제10조), 해당 경찰관서의 피해자 보호·지원시책을 총괄하고 그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유관기관·단체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 대내 교육과 대국민 홍보 계획수립, 시행 등을 임무로 한다(동법 제11조).

이 밖에 전담체계로서 청문감사관 소속으로 범죄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배치하고, 케어(CARE)요원은 범죄피해자전담경찰관으로 각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및 경찰서 청문감사관 소속으로 배치하고, 피해자보호관은 피해자서포터로서 해당 경찰관서의 수사부서 소속으로 배치되었다.

(2) 성폭력피해자등 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

2000년도 초반에 성폭력 피해자가 병원 진료와 수사지원 지연으로 3일간 병원과 경찰서를 전전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2005년 서울 경찰병원에서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지원센터로

시작되었고, 이후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간에 센터설치에 대한 협의를 하여, 현재는 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다.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성매매 피해자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폭력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설립 목적이 있다. 이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그 근거규정으로 하며, 병원을 중심으로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의료지원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 있어 여성경찰관이 24시간 상주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고 피해의 치유까지 종합적으로 이루고자 한다(백일홍, 2014: 63).

원스톱지원센터는 센터장, 관리운영팀장, 관리운영팀, 수사팀을 두며 여성가족부와 협의하여 팀명 변경 그 외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센터장은 수탁병원장으로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해 총괄하고 사업수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한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수사팀으로는 파견하여 상근하는 경찰관과 상담사, 간호사, 임상심리사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파견 경찰관은 해당 경찰관서 등과 협의하여 피해자 진술녹화·사진촬영·성폭력응급키트에 의한 증거수집과 입회·감정의뢰를 한다. 또한 가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여 신속한 보고로 범인 검거에 기여하고, 피해자 상담 및 자문 변호사 등 연계를 통해 각종 법률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상담사는 피해자와 그의 가족에 대한 상담과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간호사는 피해자와 그의 가족에게 의료상담 및 의료지원뿐만 아니라 경찰관과 함께 증거채취를 한다. 임상심리사는 전문적인 심리상담사로서 아동·장애인 전문 상담과 아동 및 피해자 부모의 심리치료 및 심리평가를 담당한다(여성가족부, 2012: 12).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여성가족부와 지자체로부터 분기별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기존에는 100% 국가 보조금이 지원 되었지만, 운영수행체계를 개편하여 국고지원은 50~70%이고, 나머지는 지자체의 매칭사업을 통해 운영된다.⁷²⁾ 일반적으로 국가보조금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전체예산의 70%,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전체예산의 30% 지원받아 운영된다.

성폭력 사건이 피해자 또는 가족 등에 의해 경찰서에 접수되거나, 상담소 등 민간 단체를 통해 접수되면, 해바라기센터로 바로 연계되어 1차 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

정을 도모하고, 상담기록표를 작성한다. 여기는 가해자의 정보는 물론이고, 피해자의 정보, 욕구, 가족정보 등 핵심 정보를 파악한다. 후에 사건을 분석하여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구상하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절차를 안내한다(백일홍, 2014: 65).

피해자에게 의료지원을 통해 증거물을 채취하고 산부인과, 정신과, 응급의학과 의사로 구성된 전담 의료진을 통해 피해자 진료 및 진단서 발급을 한다. 피해자의 증거채취 및 치료를 마친 후, 수사지원을 위해 여성경찰관이 24시간 상주하면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피해자 진술이 가능하도록 하고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한다. 법률 지원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대한변호사협회·한국성폭력위기센터 및 경찰청 무료법률지원단(경찰병원에 한함)과 연계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 후에도 상담소, 쉼터 등 관련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사회복지 및 재활지원을 꾸준히 받을 수 있도록 한다(백일홍, 2014: 65).

(3) 피해자심리전문요원(CARE 요원)

범죄피해자들은 범죄로 인한 신체적 피해손실 외에도 정신적인 후유증이 남아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아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많은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김효정, 2012: 103). 경찰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06년 8월, 피해자의 직접적인 손실피해와 정신적인 후유증에 대해 심리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경찰청 최초로 심리학 전공자를 CARE팀 소속 정규직 경찰인 피해자심리전문요원으로 특별 채용하여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케어요원은 「Crisis-intervention, Assistance & REsponse」의 약자로, 위기개입 및 지원·대응을 의미하며, 영어단어인 care의 돌본다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피해자심리전문요원은 사건 발생 초기에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의 정신적·심리적 안정을 유도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한다.

케어요원은 각 지방청에 배치되는데 2007년에 1기 10명은 5개 지방청의 형사과(혹은 수사과)강력계에 수사경과를 부여받아 2명씩 배치되었고, 1기 한명이 서울에 추가로 배치되었다. 이후 2010년 9월에 케어팀의 활동을 지원·관리하고 있는 경찰청 수사국 소속의 인권보호센터가 감사관실로 이관되면서 케어요원들도 수사부서에서 청문감사관실로 소속을 옮겼다. 현재 총 17개의 지방청에 평균 2명씩 배치되

어 32명이 활동하고 있다(백일홍, 2014: 67).

케어요원은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조직폭력 등의 강력범죄 발생 시 초기에 현장에 출동하여 심리적인 안정을 유도하고, 심리상담 및 치료, 평가를 통해 심리적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경제적 지원 및 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돕기 위해 관련된 범죄피해자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심리적 지원 및 피해자에게 필요한 절차적 권리 및 정보를 제공한다.

피해자를 지원하는데 있어 경찰자체의 예산이 산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상담실 운영이나 피해자의 심리치료를 위한 평가지 및 심리 측정 도구 등의 구비만 예산으로 지원된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발생 초기부터 개입하여 피해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지원을 위한 계획을 구상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백일홍, 2014: 67).

(4) 임시숙소

2014년 4월부터 시행중인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내 경찰 예산을 최초로 확보하는 사업은 강력범죄 및 보복범죄를 우려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단기간에 피해자 임시숙소 숙박비용을 제공하며, 최대 5일까지 가능하다. 현행법상 특정범죄에 한하여 범죄피해자의 임시 거주시설이 성폭력·가정폭력 등 주로 여성 피해자에 대해서만 제공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라고 평가받고 있다.

2) 법무부와 검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체계

검찰은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활동에 있어 법률의 제정과 주체적인 역할을 해왔다. 특히, 법무부와 검찰은 범죄피해자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과 운영·감독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법무부 장관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범죄피해자보호법」 제12조에 의거하고 있으며, 경찰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결망을 통해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백일홍, 2014: 68).

2004년 10월부터 검찰수사관 중 경력과 법적지식이 풍부한 6-7급 직원을 대상으로 피해자 보호를 전담하는 피해자지원담당관을 배치했다. 피해자 지원 담당관은

범죄피해자로부터 상담이 접수되면 범죄피해자와 전화 또는 면접 상담을 실시하며 범죄피해자에게 상담 및 법적 구제방법에 대한 조언을 한다(임예운, 2014: 87).

1차 계획인 2007년부터 2011년까지와 2차 계획인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범죄피해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계획으로 범죄피해자에 원상회복과 피해자의 지위강화, 사생활 평온보호를 정책목표로 한다.

이를 실현하는 정책과제 1차에는 ‘범죄피해자의 손실복구 지원’을 위한 범죄피해자 가구조금 지급, 의료·보건 서비스 제공, 법률구조 지원, 주거 및 고용의 안정지원, ‘형사절차 참여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사생활 평온과 신변보호’, ‘교육훈련과 조사연구 및 홍보’를 위한 범죄피해자 실태조사 및 연구와 홍보활동, ‘민간단체 지원·감독’, ‘범죄피해자보호 기금 운용’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한다(백일홍, 2014: 68).

현재 추진 중인 2차 정책과제는 ‘피해자의 손실복구 지원’을 위한 범죄피해자 조가지원시스템 확립, 상담-진술-치료-손실복구 지원의 통합 시스템 구축, 의료·주거·취업지원 및 법률지원 등 다각적·자립적 자활 지원, 범죄피해가구조금제도의 개선, ‘형사절차 참여’를 위한 참여권 보장, 전문가의 조력으로 자유로운 진술 보장, ‘사생활 평온과 신변보호’를 위한 정보보호 및 형사절차상 2차 피해 방지를 내용으로 한다. 기존의 1차 정책과제로 법률적 근거 마련과 제도 운영의 기본적인 내용을 사안으로 하였다면, 2차 정책과제는 이를 구체화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법률적 근거를 통한 형사절차 참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법무부 인권구조과, 2014).

(1) 스마일센터

스마일센터는 2010년 7월 법무부로부터 범죄피해자의 정신적 외상 및 심리치료를 전문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스마일센터’를 서울 송파구에 설립하여 시범운영을 하였다. 2010년도 초기에는 ‘피해자 복지센터’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고, 이후 부산에서 2012년 7월에 스마일센터로 개소하게 되었다. 현재는 6개소가 운영 중이다.

스마일센터는 범죄피해자를 위해 정신과 전문의, 임상심리전문가, 간호사, 사회복지사, 행정요원 그리고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협력하여 정신과

진료, 심리학적 평가, 심리치료, 상담, 법률지원, 사례관리,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센터 내에 설치된 임시주거시설(생활관)을 단기로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비용은 모두 무료로 제공된다.

스마일센터는 센터장을 중심으로 자문위원회와 운영위원회로 구성되고, 총괄팀장이 센터 업무를 총괄하고, 실무팀은 다시 심리지원, 사례지원, 행정지원 및 시설관리로 나뉜다. 심리지원팀은 정신과전문의, 임상심리전문가, 간호사로 구성되며, 피해자와 가족의 정신과 진료, 심리평가, 심리상담 및 치료를 맡으며, 사례지원팀은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사, 간호사, 안전요원으로 구성되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사례접수 및 초기면담, 피해자자조모임을 지원하고 입소자의 생활지도와 수사·법률지원을 담당한다(서기호, 2013: 24; 백일홍, 2014).

법무부 산하의 스마일센터는 심리상담 및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단독으로 활동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전문적인 상담과 임시주거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활동한다. 2013에는 전국 스마일센터에서 464명에 대해 심리치료를 제공하였고, 임시거주 및 법률지원서비스를 6,772건 제공하였다(법무부 인권구조과, 2013).

(2) 형사조정

형사사건을 조정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사건처리 또는 판결에 반영하는 일체의 절차를 형사조정이라 한다. 여기서 조정(調停, mediation)이란 중립적 위치에 있는 제3자가 사건 당사자를 중개하고 쌍방의 주장을 절충하여 화해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화해(和解, compromise)는 분쟁의 당사자가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는 것이며, 당사자가 직접 분쟁해결에 나서지 않고 제3자에게 맡기는 중재(仲裁, arbitration)와 구별된다.

조정과 중재는 재판에 의하지 않고 분쟁 당사자 사이에 제3자가 개입하여 화해를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 일상적인 의미로는 큰 차이가 없으나 법률적으로는 구별된다. 즉 중재는 제3자의 판단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며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반면 조정은 제3자의 조정안에 대해 분쟁 당사자들이 승낙하면 화해가 이루어지지만 그 조정안이 법적인 구속력은 없어 당사자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2006년도부터 검찰 수사단계에서 형사조정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범죄사건 기소이전에 피해자의 욕구를 확인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원활한 화해를 위해 회복적 이념을 반영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형사조정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장규원, 2011: 393). 첫째, 민사사건의 형사 분쟁화 등 소송으로 치닫는 각종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여 사회의 전반적인 분쟁해결능력을 높일 수 있다.

둘째, 형사조정은 소송비용을 줄일 수 있다. 가벼운 분쟁이나 사소한 시비로 인한 사건은 형사사법기관 업무를 가중 시킬 수 있으나, 형사조정은 가해자, 피해자, 조정자가 분쟁을 사법적 절차로 나아가지 않도록 해결하기 때문에 과도한 소송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셋째, 형사조정은 사회적 명예, 정신적 충격 등 개인적 피해의 조기 구제가 가능하다. 당사자 사이의 사소한 분쟁이 형사사건화되어 그들이 경찰, 검찰, 법원에 드나들게 되면 개인적 피해가 발생한다. 그러나 비공개로 진행되는 형사조정을 통해 사건을 신속히 해결한다면 불필요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넷째, 형사조정은 지역사회의 분쟁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범죄는 분명 사회문재인 동시에 지역사회의 문제이다. 따라서 그 문제의 해결법은 지역사회에서 찾아야 한다.

다섯째, 형사조정을 통해 분쟁 당사자는 만족을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형사조정에서 회부된 사건은 이웃, 친구 등 서로 안면이 있고 가까운 사이의 가벼운 분쟁이다.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는 피해복구를 통한 손해의 보전, 범죄에 대한 복수와 응징 감정의 해소, 사회적 의사결정에 참여했다는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형사조정은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피해복구 등이 더욱 절실한 법률 소수자나 약자에게 형사조정은 중립적인 조정자를 매개로 한 조정을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꾀할 수 있다.

3) 여성가족부의 범죄피해자 보호 체계

우리나라 여성정책 국가기구의 본격적인 출발은 정부조직법 제18조와 정무장관실 직제 제2조에 의해 1988년 2월 25일에 설치된 정무장관(제2)실부터라고 할 수 있

다. 정무장관(제2)실은 대통령 및 그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면서 사회·문화에 관한 업무를 대상으로 하되 특히 여성분야에 중점을 두어 전반적인 여성정책에 대하여 총괄·조정하였고, 각 부처 청의 협조요청 외에 여성의 권익과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 및 정책입안 시 사전 협조를 통하여 부처 간 상충하는 시책에 대해서는 이를 조정하고 사전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몇 차례의 직제 개정을 거친 후 1998년 2월 28일 폐지되었다.

그 후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조직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여성특별위원회가 1998년 2월 28일 설치되어 여성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다.

특히, 1999년 2월 8일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이로 말미암은 피해자의 권익을 구제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여성특별위원회는 조직과 기능, 인력과 예산 등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어 급격히 변화하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 여성의 시대를 대비하기에는 미흡하여 정부 각 부처에 분산된 여성 관련 업무를 일괄해서 관리·집행할 여성가족부를 신설하였다.

신설 여성가족부는 기존의 여성특별위원회 업무와 함께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윤락행위 등의 방지업무 및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사무를 이관 받고, 노동부에서는 일하는 여성의 집 사무를 이관 받아 수행하였다.

2004년 6월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 받은 영유아 보육업무까지 수행하게 된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남녀차별의 금지 및 구제 등 여성의 지위와 권익뿐만 아니라 여성인적 자원의 성장 동력화를 통하여 국가경쟁력 제고 및 양성평등사회의 구현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기구로 발전하였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전통적 가족구조와 역할이 변화하고 가족해체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새롭게 형성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가족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이 시급해짐에 따라 정부조직법을 개정(2005. 3. 24)하여 여성가족부가 수행하는 기능 이외에 통합적 가족정책을 수립

하고 각 부처의 가족정책을 수립·조정·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로 개편하였다.

여성가족부의 대표적인 피해자지원기관으로는 각 지역병원에 설치되어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의 피해 아동과 여성을 보호하는 해바라기 아동센터,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가 있다. 이는 아동성폭력 피해 아동과 가족들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갖추기 위해 2004년 여성가족부의 전담기관으로 서울 연세의료원 설립으로 시작되었다. 또한, 원스톱지원센터와 함께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등의 처리를 위해 피해자의 의료치료 및 심리치료는 물론, 형사절차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적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2차 피해 없이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백일홍, 2014).

2015년 현재 전국적으로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의 인프라 개편·확대로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지원을 하고 있다. 기존에 유형이 복잡한 여성·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등의 3개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해바라기 센터’로 일원화하고 해바라기아동센터 경찰 수사지원 활성화, 서비스 지원 대상 조정 등의 기능을 조정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피해자 지원시설 확대로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성폭력 해바라기센터 36개소(2개소 확대), 성폭력 상담소 100개소(4개소 확대), (가정폭력)주거지원시설 239호(40호 확대), 가족보호시설 21개소(3개소 확대), 이주여성보호시설 28개소(1개소 확대)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센터, 보호시설 등의 구조적 안전 및 지원 환경 개선을 위하여 2015년에 15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피해자 긴급피난처(18개소)에 전담인력의 배치로 신속한 피해자 긴급구조 및 시설 연계 지원을 하고 있다.

피해자 중심의 지원서비스 확대하여 갈 곳 없는 성폭력 피해 아동 및 청소년이 일정 기간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형 공동생활시설을 신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교육 및 상담·사례관리로 탈 성매매 및 건강한 성장 지원을 하고 있으며, 민·관 협력으로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 경영 컨설팅을 실시하여 탈 성매매 여성의 지속적인 일자리를 연계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5).

4) 교육부의 범죄피해자 보호 체계

교육부는 학교교육, 평생교육 및 인적자원 개발정책과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으로, 학교폭력대책과에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피해학생이나 학부모를 전담하는 지원기관을 설치 및 운영하는 등 각 지역 시·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피해자 전담기관을 운영한다. 2004년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5년마다 학교폭력 대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한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학교폭력을 국정과제의 4대약의 하나로 규정하여 예방중심의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을 추진하였고, 다양한 자율적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학교역량 제고 및 은폐·축소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백일홍, 2014).

교육부는 학생의 환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단위학교 중심의 피해 학생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문상담교사 확충과 단위학교 Wee클래스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즉시 보호하고, 가정형 Wee센터 및 Wee스쿨을 확대 설치하는 등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치유를 위한 전문기관 연계 운영 등 피해학생 특화 전문 치유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단위학교 중심으로 특별교육 및 학교장 긴급조치 확대 등의 가해학생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학교폭력 가해유형 및 심각성 등 수준별로 맞춤형 교육 및 선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회복적 관점의 '교우관계 회복기간' 운영 방안을 도입하고, 화해·분쟁 조정 및 안정적 회복 지원을 위하여 '분쟁조정 지원단' 및 '학생 생활지도 자원 봉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2012년 1월 12일 교육부와 경찰청, 여성가족부가 피해상담에서부터 사건 이후까지 학교폭력에 대하여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각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던 전문상담기관을 통합하여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를 전국 시·도 광역 단위 지방경찰청에 17개를 설치하였다.

나. 지방정부의 범죄피해자 지원 체계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적인 근거로 지방조례를 통해 범죄피해자보호와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2009년 3월 6일 청주시에서 제정한 「청주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를 시작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자지원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여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자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범죄피해자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립과 추진을 가능하게 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 행사에 영향을 미쳐 정책의 입법 경쟁과 지역주민이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지역특색에 맞는 조례의 제정을 가능하게 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일상생활에서 살아있는 법으로 가능하게 한다(박광섭·김혁, 2013: 441).

다. 민간단체의 범죄피해자 지원 체계

우리나라에서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민간단체의 출현은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민간단체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991년 4월 설립된 한국성폭력상담소이다. 이후 1994년 성폭력 특별법과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으로 주로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관련 민간단체들이 급증하게 되었다. 이 외에도 2000년 「아동복지법」(법률 제6151호, 시행 2000. 7. 13.)의 개정으로 인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증가하였고, 아동성폭력피해자를 위한 해바라기아동센터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2004년 「노인복지법」(법률 제7152호, 시행 2004. 7. 30.)의 개정에 따른 노인학대방지센터 등이 만들어졌다(임예운, 2014: 78).

이 연구에서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와 성폭력·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1366등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1)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민간차원의 조직으로는 범죄피해자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다. 이는 특정 범죄유형에 대한 피해자의 지원이 아닌 모든 강력범죄에 대한 보호와 지원업무를 담당하며, 전국 단위의 민간 피해자지원

단체이다. 2000년도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의 필요성이 논의되었고, 다른 기관들은 상담에 중점을 둔 지원만 행하였기 때문에 범죄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2003년 6월 16일 피해자지원센터의 설립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고, 9월 5일 김천·구미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립되었는데, 구미센터가 먼저 생기고, 12월 달에 김천센터가 개소하기에 이르렀다. 이어 11월에는 대전 검찰청 건물 산하에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각각 설립되었다. 김천·구미는 초기에 순수 민간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대전의 경우에는 절충적인 민간단체의 성격을 띠며 시작되었다. 이렇게 시작하게 된 이유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있어 민간차원과 정부기관의 대책을 두고 운영을 비교해보고자 함이라고 생각된다(백일홍, 2014).

범죄피해자보호센터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첫째, 상담업무이다. 범죄발생 직후에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인 피해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센터에서는 ‘범죄피해상담 전문가’가 심리상담 및 법률·의료·형사조정 등의 상담을 하고 있다.

둘째, 긴급구호 및 의료지원으로 하고 있다. 범죄발생 직후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어 치료가 필요한 경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적절한 의료기관을 안내하고 있다. 자력이 없거나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어려운 범죄피해자의 경우 사정에 따라 치료비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다.

셋째, 경제적 지원이 가능하다. 가해자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범죄피해자구조법에 의하여 국가가 대신 구조금을 지급하는 범죄피해자구조금제도가 있으며,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원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안내가 가능하다. 또한, 범죄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태에 빠진 경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요청하여 생계비, 학자금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민간차원의 지원기구로서 성격을 띠고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경우 전국적인 설립을 위해 법무부 및 검찰에서 일괄적으로 검찰청 건물 산하에 설치되어 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은 집행기관인 각 분과위원회에 따라 계획되지만, 그 외의 피해자의 생활서비스 부분에서도 많은 지원활동을 시행한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센터별로 지역적, 사업적 특성에 따라 분과위원회가 형성되어있고 위원들은 무보수로 활동하거나 실비를 지급하기도 한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조직은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각 분과위원회와 사무처 등으로 구성되며, 분과위원회는 각 센터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백일홍, 2014).

2) 성폭력·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성폭력·가정폭력 등의 문제에 대해 관심이 집중된 1980년대 후반에는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여성의 권리옹호와 지위향상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1956년은 여성문제연구원 부설기관인 여성법률상담소가 창립되었고 1983년에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대명제에서 아내학대에 대한 상담을 위한 여성의 전화가 창립되었다. 그 후 1987년에 여성민우회와 여성단체연합 등이 결성되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성차별 없는 평등 사회를 실현하고, 여성 복지의 향상, 민주 사회 실현과 이를 위해 여성운동단체 간의 협력과 조직적 교류 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렇듯 1980년대에는 활발한 여성인권 운동을 바탕으로 과거에 숨겨져 왔던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의 피해여성들을 위한 보호와 지원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백일홍, 2014: 112).

과거 우리나라에서 성폭력은 오랫동안 ‘사적인’, ‘중요하지 않은’ 일, ‘수치스러운’ 성문제, ‘여성의 정조에 대한 문제’, ‘여성들의 거짓말’로 치부되어 왔기에 문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한국사회의 왜곡된 성 인식과 성문화는 성폭력 생존자가 적절한 지지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했다. 이처럼 성폭력이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라는 문제의식도 희소한, ‘성폭력’이라는 말조차 낯설던 1991년,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문을 열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이 성별 권력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알려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활동하는 여성운동단체이다. 지금까지 7만 5천여 회가 넘는 상담을 통해 성폭력피해생존자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성폭력 관련

법률 제·개정 및 제언 활동, 정책 감시 및 비판, 성폭력 통념을 깨기 위한 출판사업과 대중교육 등 활발한 반성폭력운동을 펼치고 있다.

성폭력상담소의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폭력피해생존자를 상담하고 지원한다. 성폭력피해생존자 상담 및 심리적, 의료적, 법률적 지원, 성폭력피해생존자 자조모임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부설 성폭력피해생존자 보호시설 ‘열림터’ 운영 등이 있다.

둘째, 성폭력을 조장하는 사회 문화를 바꾸어 나간다. 젠더감수성, 인권감수성 확산 활동, 성차별/성폭력 문화를 바꾸는 활동, 성폭력예방교육 및 성폭력 관련 서적 출판, 부설 연구소 ‘울림’ 운영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활동을 한다. 성폭력특별법 및 형법 제/개정 운동, 경찰, 검사, 수사관 및 사법부 의식 개선 운동, 여성, 성폭력 관련 정부정책 감시 및 제언, 국제인권조약 기반 법/제도 감시 및 비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가정 폭력 상담소는 가정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서적 지원과 아울러 가정 폭력 예방 활동을 통해 건전한 가정생활을 정착시키고 여성의 인권을 회복시켜 평등하고 밝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함에 그 목적이 있다.

교육 및 홍보 사업을 통해 가정 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건전한 가족 문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정 폭력 피해자 심리 상담 및 가해자 교육에 힘쓰며, 어린이 가정 폭력 및 학대 등 가정 폭력으로 상처 받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통하여 가정 폭력 피해자가 밝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가정 폭력 상담자들에 대한 경찰서, 심리 상담 센터 등 관계 시설과의 연계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 외 가정 폭력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자료, 팸플릿 등을 만들어 가정 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고, 가정 폭력 예방을 위한 지침 안내 및 피해 신고 요령 등을 널리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설립단체와 주무기관에 따라 다양한 성향을 띠는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은 여성피해자 지원기관의 부설기관으로 성폭력과 가정폭력 상담소의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며,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순수민간형태로 후원과 기

부만으로 운영되는 센터도 있다.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및 관련 상담소는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YWCA상담센터, 가정폭력피해자긴급피난처, 아동성폭력전담센터,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여성 장애인 어울림센터,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자활지원센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등 설립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김현철, 2010, 97).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에 대해 의료지원으로서 의료비 및 간병비 등을 지원하고, 피해로 인한 민사·가사소송·형사고소 등의 법률문제에 대해 무료법률구조사업을 확대하여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성폭력·가정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유일한 목격자이자 피해자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형사절차과정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수사기관의 조사와 증인신문 등에 동행하고,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와 관련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에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한다(이미정, 2013: 41).

3) 1366

1366센터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 및 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라도 전화를 통해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된 국번 없는 특수전화 「1366」을 1년 365일 24시간 운영하여 여성인권을 보호하고 있다.

2001년에는 여성부가 신설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업무를 이관하였고,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운영체계를 구축하였다. 1366의 운영의 목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기상담 및 긴급보호를 위한 초기지원체계 구축, 둘째, 여성폭력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상담, 셋째, 연계기관 등 네트워크 중심기관 육성 등이다. 이를 통하여 상담소 연계, 수사기관 연계, 보호시설 연계, 의료기관 연계, 사회복지기관 연계, 법률기관 연계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역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정폭력, 성매매, 성폭력 등 위기상황에 처한 여성에게 24시간 긴급전화상담 운영을 통해 즉각적이고 다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여성폭력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366의 운영주체는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

다. 다만, 민간단체의 위탁이 곤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일반적인 설치기준 및 규모는 연면적 100㎡ 이상인 별도의 독립적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해외성매매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UIFN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여성긴급전화중앙지원단에서는 해외성매매피해자 지원을 위해 일본, 호주 등 14개 국가를 대상으로 성매매피해여성들이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수신자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제전화이다.

1366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6에 근거하여 전국 16개 시·도에 17개소에 중앙센터 및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운영하고 있으며,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다. 단, 민간단체에 위탁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는 사무실과 상담실 및 긴급피난 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다.

4) 여성의 전화

학대받는 여성을 돕기 위해 1983년 6월 발족한 여성단체이다. 지금까지 가정 내 문제로만 덮여 있던 매 맞는 아내들의 고민을 덜어 주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등의 전화 상담을 주로 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운영하는 크리스천 아카데미를 수료한 여성운동가들이 남편으로부터 폭력 행위를 당한 여성들을 위해 상담 활동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대한민국 최초의 가정폭력, 성폭력 전문상담기관이다. 2009년 ‘여성의 전화’에서 ‘한국 여성의 전화’로 개편하였고, 전국에 25개 지부를 두었다. 총회와 이사회, 운영위원회를 통한 심의·의결 기구와 집행기구인 사무처에 상임대표 및 공동대표, 사무처장과 각 운영분과가 있다. 각 운영분과는 인권정책, 교육, 기획, 운영, 참여, 사업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설기관으로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쉼터, 한국여성주의상담실천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여성폭력 추방운동, 평등평화 마을 만들기, 지역여성 미디어운동, 결혼이주여성운동, 이혼여성운동, 여성의 경제적 권리 확보운동, 교육사업, 국제연대 등의 활동을 하였다.

여성의 전화는 폭력 없는 세상, 성 평등한 사회를 위해 일하고 있다. 한국사회 최

초로 폭력피해여성을 위한 상담을 도입하였고, 쉼터를 처음으로 개설하였다. 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이주여성문제 등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으로부터 여성인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5)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광역시·도와 시·군·구 단위에 설치하는 가족지원센터로서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전달체계라고 할 수 있다. 가정문제의 예방이나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가정기능 강화, 가정의 잠재력 개발, 가족공동체 문화 조성, 다양한 가정의 욕구 충족, 가정과 사회의 통합을 지향하는 사업 전달체라고 할 수 있다.

건강가정법 제35조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러한 법의 설치 근거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중앙과 시·도 그리고 시·군·구 등에 설치되며, 건강가정사가 배치되어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시·도와 시·군·구 등 지역에 설치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내에서 가정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종합적으로 상담하는 1차적인 창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역사회 내에서 가정생활 상담의 1차적인 창구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되면,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복지가 수요자 중심의 복지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지역주민 가까이에서 언제든지 쉽게 찾을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가 되어야 한다.

또한 해당 지역사회에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최종적인 단계로, 대주민 교육, 상담, 문화사업 및 정보 제공 등에 주력하는 역할과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중, 시·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은 광역자치단체의 건강가정정책 및 관련 통계의 수집과 제공,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관련 시설 종사자에 대한 정보 제공과 알선 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기초 자치단체의 건강가정 관련 통계, 해당 지역 내 건강가정 수요자의 요구 조사 및 시설과 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 건강가정 인력 매개, 대주민 건강가정사업 실시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시·군·구 센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대주민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곳이다. 또한, 시·군·구 센터가 없는 경우에는 그 역할을 대행할 뿐만 아니라 시·도 건강가정정책의 연구와 시·도 내 건강가정 관련 종사자 교육, 지방 센터 협의체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 동시에 중앙 센터와 시·군·구 센터를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 근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 35조」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는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을 위하여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하여야 한다.

중앙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보건복지가족부와의 연계 속에 건강가정사업의 큰 틀을 개발·제공하며, 총괄기획, 조정, 지원, 평가, 프로그램 개발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고,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한다.

제2절 사회연결망 이론

1. 사회연결망의 개념

사회연결망이론에 의하면, 각 개인의 상호작용 연결망은 행위를 통해 생산 또는 재생산되고 유지되며, 동시에 개인들에 의해 생겨나는 연결망의 전체구조는 그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본논리로 하고 있다(Wasseman & Faust, 2006).

이러한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은 사회연결망이론을 근거로 하여 사회현상 및 인간행동을 분석하고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방법이다. 또한, 전통적인 통계적 방법론과 다르게 개별적인 행위의 주체가 독립적이라는 가정 대신에 개개의 행위자들이 상호 의존적이라는 가정 하에 서로간의 관계에서 도출되는 특성을 분석하는데 적합한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는 다양한 협력기관들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데, 범죄피해자 보호에 참여하는 기관들 간의 관계를 정확히 분석해 내기 위하여 이를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관계성의 형태, 혹은 관계에 대한 연결패턴을 분석한다.

이러한 사회연결망분석의 가장 큰 장점은 행위자간의 관계분석을 통하여 숨어있는 구조적인 연결패턴을 발견하여 도식화 하여 전체적인 수준에서 조직간 연결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자원과 정보의 흐름에 따른 조직간 관계의 구조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구조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조직들을 판별해냄으로써 연결망의 효율성 내지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통한 정책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이다(Scott, 2000; Hanneman, 2001). 즉 미시적인 구조뿐만 아니라 조직간·계급간·국가간 상호작용의 형태로서 사용될 수 있다(이용표, 2007).

사회연결망분석은 주로 사회학 분야를 중심으로 발전된 연구방법으로서 주로 조직 및 집단의 구조적 특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려는데 많이 사용되어 왔으며, 이는 통계적 분석보다는 수리사회학에 더 가까운 방법으로 구성원들간의 관계의 양상을 요약하고 가시화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분석방법이다(이재열, 2003).

이에 사회학이나, 경영학, 커뮤니케이션 및 마케팅, 공공정책학, 체육학 등에서 최근 다양한 조직 및 집단의 구조적 특성을 규명하여 관련 문제를 해결하려는 연구가

많이 시도되었다. 또한, 경제학, 역사학, 교통학 등의 학문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학제간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그 유용성을 높이 인정받고 있다.

현재 경찰학과 범죄학 분야에서 사회연결망분석을 적용한 연구가 미미하여 그 개념이 생소하기 때문에 우선 사회연결망이론에 관한 주요 지표에 대해 살펴본 후 이 연구에서 사용하려는 관련 기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다.

2. 사회연결망의 종류

앞에서도 밝혔듯이, 사회연결망분석의 분석 대상은 사회 관계망의 형태, 혹은 패턴으로 정의되는 사회 구조이다(김용학, 2007b). 따라서 사회연결망분석의 특징은 개별 분석 단위의 속성을 분석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분석 단위 사이의 관계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사회연결망분석의 자료는 관계를 변수로 다루기에 적합한 행렬의 형태를 띤다. 행렬의 (i, j)항은 i에서 j로 향하는 관계 유무, 혹은 강도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어떤 행렬이 친구 관계망을 나타낸다면, 그 행렬의 (i, j)항은 행위자 I와 j의 친구 관계가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행렬의 형태로 표현되는 연결망 자료는 크게 완전연결망(complete network), 자아중심연결망(ego-centric network), 준연결망(quasi-network)으로 나뉠 수 있다.

우선, 완전연결망은 단어 뜻 그대로 존재 가능한 모든 관계를 모두 조사하여 구성되는 자료를 말한다. 학급의 친구망을 예로 들면, 한 학급의 모든 학생들의 친구 관계를 모두 조사하여 이를 행렬로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 학급의 인원이 50명이라고 가정하면 이 행렬은 (50×50)행렬의 자료로 구성될 것이다. 이는 가장 이상적인 자료 형태라고 볼 수 있지만, 완전연결망 자료를 얻어내기란 쉽지 않다. 완전 연결망의 경우, 표본 추출에 의한 조사가 아닌, 전수 조사를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 연구의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 관련 협력기관들에 대한 완전연결망 형태의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모든 기업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완전연결망의 자료는 경계선이 뚜렷한 조직과 같은 집단에 대한 조사에 적합한 자료의 형태이다.

자아중심연결망은 위와 같은 완전연결망 형태의 자료를 얻기 힘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결점(node)으로부터 자료를 확장해 나간다는 점에서는 완전연결망 자료의 수집방법과 동일하다. 그러나 자아중심연결망은 완전연결망과 달리 전수 조사가 아닌 표본 추출에 의거한 방법을 사용한다.

자아중심연결망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무작위로 추출된 범죄피해자 보호 협력기관들을 대상으로 그들과 거래 관계를 맺고 있는 연결망에 관한 자료를 수집한 후, 실행 파트너로서의 다양한 자료를 구한다. 이러한 자료는 기관의 특성에 따른 각각의 행렬을 계산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며, 이를 통해서 범죄피해자 보호 협력기관들 간의 상호작용의 패턴을 보여주는 연결망 자료가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준 연결망이란 ($n \times n$) 행렬로 표현되는 상호작용을 직접 조사하기 힘든 경우에 쓰인다. 완전연결망과 자아중심연결망이 결점으로부터 확장해 나가는 방법을 택한다면, 준 연결망의 경우에는 소속(affiliation) 등에 의해 관계를 추론하는 방법으로 연결망을 파악한다.

준 연결망을 구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공분산 행렬이나 유클리드 거리를 구하여 행렬의 각 셀을 i, j 사이의 거리로 개념화 하는 것이다. 한 예로, 각 범죄피해자 보호 협력기관들에 대한 조사를 하며, 각각의 기관들 간의 관계·협력 횟수·종사원 수·협력기간 등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였다고 가정하자. 이를 바탕으로 원 자료로부터 이들 범죄피해자 보호 협력기관 간의 유클리드 거리를 계산하여 이를 연결망 기법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3. 사회연결망 분석에 대한 접근 방식

사회 연결망 분석을 통해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쌍방관계(digraph) 접근 방식과 구조적 등위성(structural equivalence) 접근 방식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밀도(network density), 중심성(centrality)등의 관계성 유무의 묘사 기법이며, 후자는 연결망 전체 구조에서 결점들이 차지하는 위치에 초점을 맞추는 기법이다(김용학, 2007a).

우선, 쌍방관계(digraph)방식의 연구는 두 결점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의 유무 파악에 초점을 맞추는 분석 방식이다. 직접적인 관계의 유무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연결망에 포함된 결점들 사이의 결속을 분석한다는 뜻이다.

범죄피해자 보호 협력기관 간의 관계를 다시 예로 들면, 경찰과 범죄피해자 보호 협력기관 간 서로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맺고 빈번하게 상호작용을 한다면, 한 기관 내에 존재하는 타 기관 간의 거래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기관 간의 직접적인 관계의 유무가 분석의 대상이다.

반면에, 구조적 등위성 접근 방식의 관심은 직접적인 관계의 유무가 아닌, 결점들이 다른 결점들과 맺는 상호작용의 유형(pattern of relations)이다.

예를 들어 범죄피해자 보호 협력기관 A와 B는 한 개의 같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면, A와 B는 구조적으로 동일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이들의 구조적 등위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행위자들 사이의 구조적 등위성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유클리드 거리가 자주 쓰인다. 유클리드 거리는 n차원 상의 두 벡터 사이의 거리를 계산한 것으로 이 거리를 집락 분석(Cluster Analysis)하여 같은 집락에 묶인 행위자들을 구조적으로 동일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 논문에서는 경로 거리에 기반한 다차원척도(multi dimensional scale)분석과 중심성(centrality)분석 등 다이그래프 방식을 따르는 분석 기법을 주로 사용하면서, 유클리드 거리에 기반한 블록 모델링과 상관관계수에 의한 중심주변 분석 등의 구조적 등위성의 줄기를 따르는 기법을 보조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4. 사회연결망 분석의 측정 지표

사회연결망분석의 대상은 미시적(또는 개인적)차원과 거시적(또는 구조적)차원 등 두 가지로 대별된다. 먼저 미시적 차원에서는 개별 행위자들이 다른 행위자와 쌍(pair)을 이루어 사회적, 인지적 및 물질적 자원을 상호교환 하는 행위를 그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러한 관계 쌍들 간의 연계(tie)는 상대적으로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다. 사회연결망분석에서 자주 사용되는 중심도(centrality) 지표는 이러한 연계의 정도를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미시적 지표라 할 수 있다.

가. 연결망 결속

결속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연결정도(degree)· 밀도(density)· 포괄성(inclusiveness)이 있다.

- ① 연결정도(degree): 연결 정도는 한 결점(node)이 맺고 있는 다른 결점의 숫자로서 정의된다. 친구가 많은 사람이나 혹은 마당발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연결 정도가 많은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동원할 수 있는 자원도 많고 정보의 흐름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만일 이런 사람을 연결망에서 제거한다면 연결망이 와해되다시피 할 정도로 연결망 결속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 ② 밀도(density) : 연결망 밀도란 가능한 총 관계수 중에서 실제로 맺어진 관계수의 비율, 즉, $1/n(n-1)/2$ 로 정의된다. 밀도는 관계망속의 행위자들이 다른 행위자들과 어느 정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의미하며, 0에서 1사이의 점수를 가지며 백분율로 표시할 수 있다. 1은 특정 행위자가 관계망 내에서 가질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연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관찰된 밀도는 집단의 크기와 반비례 한다. <그림 1>은 4개의 결점이 있을 경우 생길 수 있는 연결망의 형태와 각 개념들의 값을 예시하고 있다.
- ③ 포괄성(inclusiveness) : 포괄성은 한 그래프에 포함된 결점의 총수에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결점(isolates)들의 수를 뺀 수의 비율로 정의된다. 예를 들면, 20명의 그래프에서 5명이 누구와도 연결되지 않았다면, 이 그래프의 포괄성은 0.75가 된다.
- ④ 연결강도(strength)와 연결 지속기간(duration) : 지금까지 논의한 지표들이 연결망의 형태와 관계된 것이라면, 연결망의 내용과 관련된 지표들로서 연결의 강도와 연결 지속 기간 등이 있다. 이들은 신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연결의 강도는 얼마나 자주 접촉하는가의 빈도로 정의된다. 일상적으로 자주 만나는 친구에게 더욱 정이 가고 도움을 주고 받듯이, 조직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여서 접촉 빈도는 조직간 연대를 표현한다. 연결의 지속기간도 연결의 질을 재는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이다.

연결망 결속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 주제의 예로는 누가 누가와 친구가 되며, 친구 사이에는 영향을 주고받는 전염 효과가 얼마나 강한가, 혹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의 결속 집단(clique)을 형성하는지에 대한 연구 등을 꼽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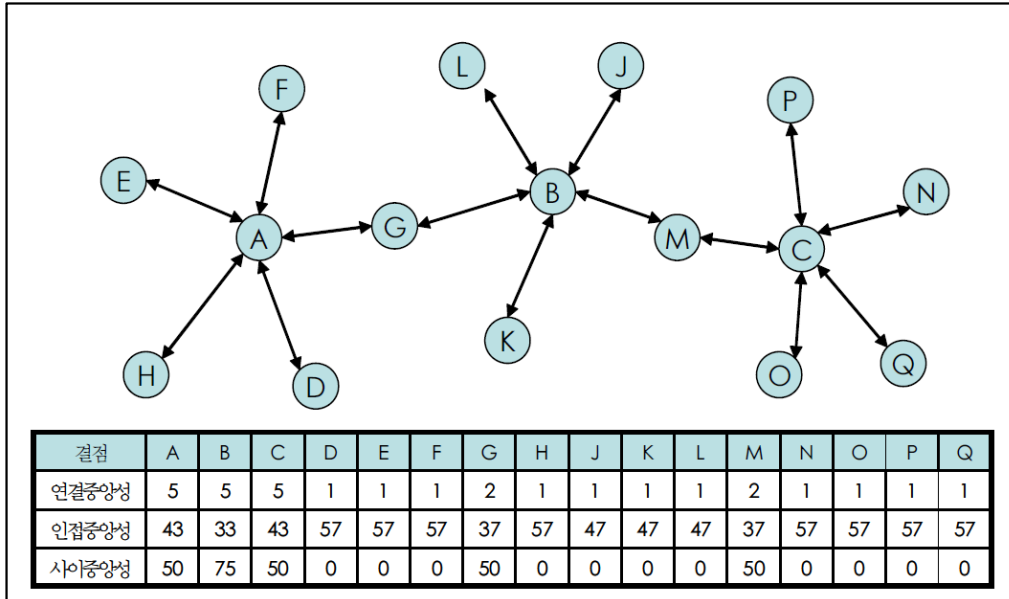
	A	B	C	D	E
연결된 결점 수	4	4	4	4	4
포괄성	1.0	1.0	1.0	0.75	0.5
연결정도의 합	12	8	6	4	2
라인의 수	6	4	3	2	1
밀도	1.0	0.67	0.5	0.33	0.17

출처 : 김용학(2007).

〈그림 1〉 연결망의 형태와 개념

나. 중앙성(centrality)

중앙성은 권력과 영향력이라는 개념과 연결되어 가장 많이 쓰이는 지표 가운데 하나이다. 대부분의 경험적인 분석에서 중앙성이 높은 개인은 특별한 사회 경제적 지위를 갖는 사람이고 조직의 경우에도 중앙성이 높을수록 생존율이 높거나 기업 성과가 좋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성은 통계 분석에서 훌륭한 독립변수나 종속변수가 된다.



출처 : 김용학(2007).

〈그림 2〉 결점의 중앙성

〈그림 2〉는 A, B, C는 모두 같은 지역 중앙성을 갖지만, 특정 결점으로부터 연결망에 존재하는 다른 결점들에 이르는 모든 거리를 합한 전체 중앙성은 B가 가장 높다.

- ① 연결중앙성 (degree centrality) : 각 개별자가 갖고 있는 링크의 개수를 의미하는 연결 정도(degree)는 국지적인 지역 중앙성(local centrality)을 측정하는 좋은 지표이다. 밀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네트워크분석 프로그램에서 최대 연결선 수에 대한 퍼센트로 표현되는 지역 중앙성은 크기가 다른 연결망들 간에는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연결망의 크기가 클수록 그 연결망에 속한 점들의 중앙성이 낮아지는 통계적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 중앙성은 같은 크기를 가진 연결망들 사이에서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 외향 연결정도(out degree)는 $\sum_{j=1}^n Z_{jk} = Z_{ik}$ 로 측정되는데, 행위자 i로부터 다른 모든 행위자들 j에게 가는 관계의 수이다.(여기에서 Z_{ik} 는 k연결망에서 I행위자로부터 j행위자로 향하는 관계의 수를 의미한다). 내향 연결 정도(indegree)는 $\sum_{i=1}^n Z_{ijk} = Z_{jk}$ 로 측정되는데, k연결망에서 행위자 j가 다른 모든 행위자들 I로부터

터 받는 관계의 수이다. 연결 정도 중앙성(degree centrality)은 전체 연결 수에서 각 행위자의 내향 연결 정도와 외향 연결 정도의 비율로 측정된다.

- ② 인접중앙성(closeness centrality) : 한 노드와 다른 모든 노드간의 평균적인 최단 경로거리를 나타낸다. 경로 거리의 합이 가장 작은 결점이 전체 중앙성이 가장 높은 네트워크 전체의 중심을 차지하는 점이다. 지역 중앙성과 마찬가지로 전체 중앙성은 방향성이 있는 그래프에서는 방향에 따라 인접성(in-closeness)과 외향인접성(out closeness)으로 구분하여 측정된다.
- ③ 매개중앙성(between centrality) : 프리만(Freeman, 1979)은 한 결점의 중앙성을 측정하는 제3의 방법으로 사이중앙성(betweenness centrality)을 제안한다. 한 노드가 다른 모든 노드들 상호간의 경로 사이에서 타인 또는 하위 그룹들간의 의사소통을 어느 정도 원활하게 연결시켜 주는가를 정도로 계량화해 준다. 즉 사이 중앙성은 다른 결점들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 ④ 위세중앙성(between prestige) : 연결중앙성이 연결 수를 중시하고, 사이 중앙성이 남들 사이에서 브로커의 역할을 중시한다면 위세중앙성은 연결된 상대방의 중요성에 가중치를 준다. 강자와의 단하나의 연결이 다른 여러 행위자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보다 자신의 영향력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반영한 것이 위세지수(prestige index)또는 위세중앙성이다.

다. 기타 지표

- ① 중심화 : 전체 연결망의 형태가 어느 정도 중앙에 집중 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 중심화(Centralization)이다. 방사선 형태의 연결망이 중심화가 가장 높은 연결망이다. 중앙성이 어떤 결점이 연결망 내에서 얼마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가에 초점을 둔다면, 중심화는 한 연결망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중앙 집중적인 구조를 가졌는지, 혹은 연결망이 얼마나 한 점을 중심으로 결속되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연결망 중심화를 측정하는 방법은 중앙성을 측정하는 세 가지 방법을 앞선 언급 하였으며, 중심화를 측정하는 방법은 가장 중심적인 점과 다른 모든 점들의 중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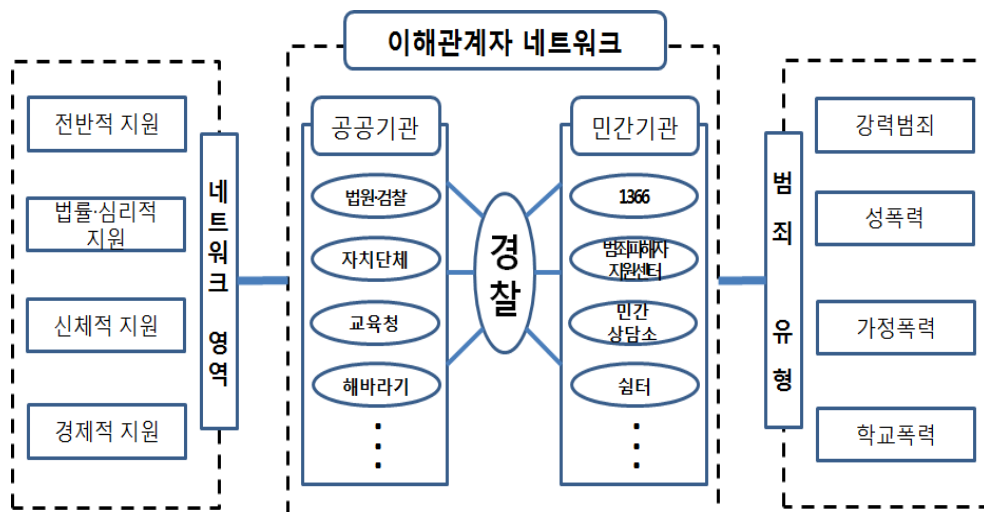
점수들 간의 차이를 각각 구하여 이를 모두 합한 다음, 이것을 논리적으로 가능한 최대값으로 나누는 것이다.

- ② 연결성 : 가장 빨리 도달할 수 있는 최소 단계수를 경로거리(geodesic distance, path distance), 몇 단계의 경로를 거치는가와 별개로 도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나타낸 개념이 도달 가능성(reach ability)이며, 연결망 결점 사이의 전달 경로의 다중성을 측정하는 최대 흐름(maximum flow) 등이 있다.

제3장 연구의 설계

제1절 연구의 분석모형

이 연구는 범죄피해자 보호 협력기관들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살펴보고 그 구조를 분석하여, 협력관계 네트워크에서 경찰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실증분석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먼저 문헌연구에서는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기존의 국내·외의 단행본, 학술논문, 연구보고서, 각종 정기간행물, 인터넷 등의 자료 및 경찰청의 경찰백서, 경찰통계연보 등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사회연결망 분석을 위한 연구의 분석모형을 <그림 3>과 같이 설정한다.



<그림 3> 연구의 분석모형

제2절 조사의 설계

1. 조사대상 기관의 선정

사회연결망 분석에서는 모집단에 근거한 표본조사를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사회연결망 분석의 주요 관심사항은 행위자 개인의 내재적 특성이 아닌 행위자간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Hanneman, 2001; Wasserman & Faust, 1994).

따라서 행위자(node)와 행위자 간의 연결(link)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회연결망 분석에서는 표본조사가 아닌 모집단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김용학, 2007). 네트워크 참여자의 범위를 설정하는 방법으로는 일정한 속성을 공유하는지에 대한 여부, 특정 사건이나 활동에 참여 여부, 일정한 빈도 이상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또는 ‘눈덩이 샘플링(snowballing sampling)’을 통해 특정 관계에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Laumann, Peter & David, 1992).

이에 따라 이 연구의 조사대상 집단은 크게 1차와 2차로 나누어 선정하였다. 1차 조사는 기존 문헌연구를 통하여 범죄피해자 보호 관계 집단의 범위를 참고하여 선정 후, 2차 조사에서 눈덩이샘플링(snowballing sampling)을 사용하여 최종 조사대상 집단을 선정하였다. 1차로 선정된 이해관계자 집단의 범위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5개(소)를 선정하여 인터뷰를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 관련 협력기관을 추천받아 선정하였다.

2. 자료수집 방법 및 분석도구

이 연구의 본조사에서 자료수집을 위해 인터뷰 질문은 심원섭·이연택(2008)의 데이터 수집방법을 토대로 구성하였다.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일반현황과, 협력 관계를 알아보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질문내용은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첫째, 일반현황의 경우, 관련 기관에 있어서 범죄피해자 보호 업무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담당자에게 설문을 받기 위해 소속기관, 해당직급, 근무연수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둘째, 협력관계와 관련한 내용은 이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항목으로서, 사전조사를 통해 선정된 이해관계집단의 목록을

작성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업무 전체에서 보는 전반적인 업무에서의 협력관계와, 업무를 세부 영역으로 분류하여 법률적 지원, 신체적 지원, 경제적 지원 등의 영역에 있어서 협력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깝게 협력하고 있는 기관들을 기재하라는 문항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조사는 2015년 8월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이루어졌고, 사전조사와 본조사는 직접방문, 전화통화 및 e-mail을 통해 이루어졌다. 조사 응답 과정에서 성실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정의 기념품을 답례품으로 증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네트워크분석 도구인 Ucinet6.1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제3절 분석의 기준

이 연구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협력기관간의 네트워크 특성을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는 데는 사회연결망 분석이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구조의 복잡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사회연결망 분석의 접근의 위치적 접근과 관계적 접근으로 구별될 수 있다(김용학, 2003). 위치적 접근은 어느 한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와 맺는 관계의 유형, 즉 전체 관계망에서 행위자는 어느 위치 혹은 어느 역할에 속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반면 관계적 접근은 개인들 간의 구체적인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한 개인이 관계들에 의해 형성되는 특정 결속 집단에 속하는지, 그리고 이는 다른 행위자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이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협력 네트워크 관계 구조 속에서 참여 이해관계집단들의 위치와 역할을 파악할 수 있는 위치적 접근을 위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경찰이 범죄피해자 보호 협력 관련 이해관계 네트워크 연결망에서 ‘중요한 위치 또는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려고 한다. 여기서 ‘중요한’ 이해관계자는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정보와 자원을 제공하거나, 다른 이해관계자를 많이 연결해주거나, 다른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관계요청을 많이 받는 단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중요한’ 집단은 단일한 기준으로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트워크 관계의 특성에 따라 중요도를 측정하는 다양한 분석지표들을 활용하여야 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중심성과, 구조적 공백 지표를 이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범죄피해자 보호 관련 협력기관 내에서 연결중앙성이 높은 이해관계자는 정보와 자원을 많이 소유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네트워크 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며, 네트워크에서 가장 활동적인 행위자로 볼 수 있다. 또한 인접중앙성이 높은 이해관계자는 다른 이해관계자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가장 적은 노력으로 빠르게 전체 연결망 내에 내제되어 있는 자원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의사결정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 즉, 접근성의 관점에서 다른 이해관계자와 매우 짧은 거리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매개중앙성은 이해관계자의 의사소통과 자원에 대한 잠재적 통제권을 측정하는 지수로서 이해관계자가 네트워크에서 매개중앙성을 확보할 경우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자원과 정보흐름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행위자들이 원하는 거래를 위해 다리 역할을 함으로써 중요도 높아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중앙성 지표를 이용하여 범죄피해자 보호 협력기관 내에서의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범죄피해자 보호 협력기관 내에서 구조적 공백에 위치한 이해관계집단은 다른 이해관계집단에 비해 중복되지 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함으로써 네트워크 내에서의 효율성과 강한 중재자의 장점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구조적 공백에 위치하게 되면 다른 행위자에 비해서 더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전략적 위치에 있게 되므로(Burt, 1992), 중요한 위치의 이해관계자를 파악하는 데 적합한 지표이다.

구조적 공백 직접적으로 인접한 조직들과의 관계만을 상징하기 때문에 지역적 수준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가지는 조직만을 찾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어(심원섭·이인애, 2009), 연결망 수준에서 효율적인 조직을 찾아내는 중요한 개념인 중앙성 지표와 구조적 공백 지표를 함께 사용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네트워크의 결속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밀도(density)를 이용하여 이해관계자간 네트워크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밀도는 행위자간 관계의 응집정도이며, 포괄성과 연결성을 타나내는 것으로, 높은 밀도의 네트워크는 이해관계자들 간에 응집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범죄피해자 보호 협력기관 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전체의 결속력을 보기에 적합하다.

〈표 1〉 범죄피해자보호 협력기관 내 이해관계자의 네트워크 분석개념

분석개념	측정 방법	해 석				
		높 다		낮 다		
밀 도	행위자간 가능한 연결 수 중에서 실제로 맺어진 연결 수의 비율로 측정	행위자간 관계가 많아 응집력 정도가 높음		행위자간 관계가 적어 응집력 정도가 낮음		
중 심 성	연 결 중 심 성	내 향	관계요청을 많이 받음	내 향	관계요청을 적게 받음	
		외 향	관계요청을 많이 함	외 향	관계요청을 적게 함	
	인 접 중 심 성	내 향	직·간접적으로 관계 요청을 많이 받음	내 향	직·간접적으로 관계 요청을 적게 받음	
		외 향	직·간접적으로 관계요청을 많이 함	외 향	직·간접적으로 관계요청을 적게 함	
	매 개 중 심 성	한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들의 중계자로서 위치하는 정도가 작음		한 행위자가 다른 행위자들의 중계자로서 위치하는 정도가 작음		
위 세 중 심 성	타 조직들로부터 연계의 대상으로 선택된 정도를 의미, 연계된 상대조직의 중요성을 가중치를 주어 그 결과를 나타내는 것		위세중심성이 높은 조직은 네트워크에서 어느 정도 신뢰를 형성하고 있으면서 효율적인 관계망을 형성		위세중심성이 낮은 조직은 네트워크에서 낮은 신뢰를 형성하고 있으면서 비효율적인 관계망을 형성	

제4장 분석의 결과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의 중심조직과 그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중심성은 개별조직이 네트워크 내 다른 조직들과 얼마나 활발한 연계활동을 했는지, 즉 각각의 조직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의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분석방법은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 인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매개중심성(between centrality), 위세중심성(deree centrality)을 통해 중심조직을 파악하였다.

밀도는 각 영역별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분석 개념이고, 중심성은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해관계자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며, 마지막으로 위세중심성은 타 조직들로부터 연계의 대상으로 선택된 정도를 분석하며 연계된 상대조직의 중요성을 가중치를 주는 개념이다(김용학, 2004). 이 연구는 우선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전반적인 업무 영역을 분석하여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범죄유형에 따라 분석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세 가지 분석개념을 통하여 각 영역별 어느 이해관계집단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에 대하여 도출하였다.

제1절 강력범죄 피해자보호의 사회연결망 분석

사회연결망분석의 대상은 미시적(또는 개인적)차원과 거시적(또는 구조적)차원 등 두 가지로 대별된다. 먼저 미시적 차원에서는 개별 행위자들이 다른 행위자와 쌍(pair)을 이루어 사회적, 인지적 및 물질적 자원을 상호교환 하는 행위를 그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러한 관계 쌍들 간의 연계(tie)는 상대적으로 강할 수도 있고 약

할 수도 있다. 사회연결망분석에서 자주 사용되는 중심도(centrality) 지표는 이러한 연계의 정도를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미시적 지표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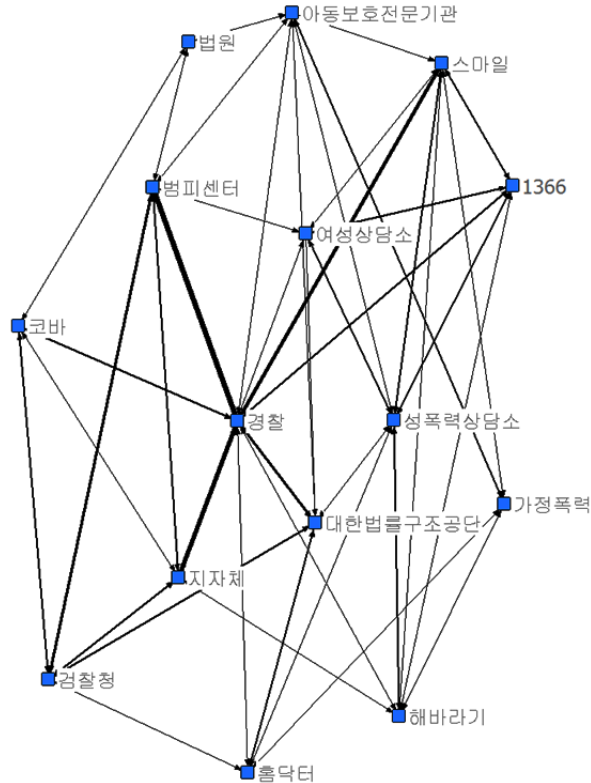
1. 강력범죄 피해자보호의 사회연결망 밀도

다음 <표 2>는 강력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의 기술적 통계량이다. 강력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는 15개의 이해관계자 집단이 연결되어 있으며, 포괄성 비율은 1.0으로 모든 이해관계자 집단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의 밀도는 0.400으로 나타났으며, 밀도는 네트워크 상의 모든 기관들이 연계를 가지고 있으면 1의 값을 가지며, 각 기관간 연계가 전혀 없으면 0의 값을 가지게 된다. 또한 네트워크 밀도 측정에서는 한 기관이 다른 기관과의 관계횟수보다는 관계가 있으면 1로 관계없으면 0으로 자료를 입력하여 분석을 하였다. 네트워크의 평균거리는 1.671로 나타났다.

<표 2> 강력범죄 피해자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 기술통계량

영역	연결된 기관	포괄성 비율	평균 연결정도 합	네트워크 평균거리	밀도
전반적	15	1.000	5.600	1.671	0.400

각 네트워크 별로 4가지 중심성의 측정과 소시오그램(SOCIOGRAM)의 상의 위치 확인을 통해 중심기관이 있을 때와 중심기관을 제거했을 때의 연결망을 제시하여 중심기관이 실제로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중심기관이 제거되었을 때 네트워크가 와해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림 4〉 강력범죄 피해자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

2. 강력범죄 피해자보호의 사회연결망 연결중심성

연결중심성 지표는 집단 내 관계가 활발한 조직과 그렇지 못한 조직과의 차이를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중심성값이 낮을수록 지역사회에서 특정 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연계의 집중이 낮고 높을수록 특정 조직의 연계 주도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연결중심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강력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는 경찰의 중심성이 23.704%(중심성값: 64.00)를 차지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범죄피해지원센터가 12.593%(중심성값: 34.00)으로 경찰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 외에도 지자체, 스마일, 검찰청, 성폭력상담소 등의 순으로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 네트워크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 강력범죄 피해자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 연결정도의 중심성

번호	순위	기관	Degree	NrmDegree	Share
1	1	경찰	64,000	23,704	0,204
3	2	범피센터	34,000	12,593	0,108
4	3	지자체	27,000	10,000	0,086
2	4	스마일	24,000	8,889	0,076
7	5	검찰청	24,000	8,889	0,076
6	6	성폭력상담소	21,000	7,778	0,067
12	7	대한법률구조공단	20,000	7,407	0,064
14	8	1366	19,000	7,037	0,061
9	9	코바	15,000	5,556	0,048
15	10	아동보호전문기관	15,000	5,556	0,048
5	11	여성상담소	15,000	5,556	0,048
8	12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해바라기)	13,000	4,815	0,041
13	13	가정폭력상담소	9,000	3,333	0,029
11	14	흡닥터	9,000	3,333	0,029
10	15	법원	5,000	1,852	0,016

Network Centralization = 19.72%

3. 강력범죄 피해자보호의 사회연결망 인접중심성

인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은 연결망의 한 결점으로부터 다른 결점에 도달하려면 필요한 최소단계의 총합으로 정의된다. 연결망의 중앙에 놓일수록 이 숫자가 작아진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인접중심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강력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에서 경찰의 인접중심성은 73.684%(거리값: 19.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66.667%(거리값: 21.00)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에 검찰, 지자체, 스마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접중심성 분석결과를 통해서, 중심성이 가장 높았던 경찰이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직·간접적으로 근접해 있으면서 관계요청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강력범죄 피해자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 인접중심성

번호	순위	기관	Farness	nCloseness
1	1	경찰	19,000	73,684
15	2	범피센터	21,000	66,667
3	3	검찰청	22,000	63,636
4	4	지자체	22,000	63,636
2	5	스마일	22,000	63,636
6	6	성폭력상담소	22,000	63,636
5	7	여성상담소	22,000	63,636
12	8	대한법률구조공단	22,000	63,636
8	9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해바라기)	23,000	60,870
11	10	홈닥터	24,000	58,333
7	11	아동보호전문기관	25,000	56,000
13	12	가정폭력상담소	25,000	56,000
14	13	1366	25,000	56,000
9	14	코바	26,000	53,846
10	15	법원	28,000	50,000

4. 강력범죄 피해자보호의 사회연결망 매개중심성

매개중심성은 상대조직을 통제할 수 있는 정도로서 한 조직이 다른 조직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서 중재자, 즉 매개 역할이 어느 정도인가를 측정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매개중심도가 높은 조직은 네트워크 구조에서 정보 및 자원의 흐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다른 조직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서 핵심적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조직이다. 매개중심성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매개중심 조직의 순위가 다선중심조직의 순위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강력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에서 경찰의 매개중심성이 17.203%(Betweenness: 31.310)로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매개중심성을 살펴보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상담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순으로 높은

값을 보였다. 경찰이 매개중심성이 높은 이유는 경찰이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접근성이 쉽다는 것과 주변지역의 풍부한 지원기관, 범죄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 등을 통하여 다른 직접적인 기관들과 폭넓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 외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은 지역사회를 거점으로 한 단체활동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들과 협의하는 매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는 다양한 사회복지관련 민간시설과 공동프로그램을 함께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파악되었다. 또한 여성상담소, 해바라기 등이 비교적 상위순위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사회복지 영역과 정부기관 영역의 네트워크 형성이 어느 정도 긴밀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 강력범죄 피해자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 매개중심성

번호	순위	기관	매개중심성 Betweenness	표준화지수 nBetweenness
1	1	경찰	31,310	17,203
15	2	아동보호전문기관	18,667	10,257
6	3	성폭력상담소	12,504	6,870
3	4	범피센터	11,898	6,538
4	5	지자체	10,922	6,001
5	6	여성상담소	8,008	4,400
8	7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해바라기)	7,953	4,370
11	8	흡닥터	7,531	4,138
7	9	검찰청	7,066	3,882
2	10	스마일	6,959	3,824
12	11	대한법률구조공단	6,167	3,389
9	12	코바	4,987	2,740
13	13	가정폭력상담소	3,595	1,975
10	14	법원	1,968	1,081
14	15	1366	1,465	0,805

Network Centralization Index = 12.90%

5. 강력범죄 피해자보호의 사회연결망 위세중심성

위세중심성은 타 조직들로부터 연계의 대상으로 선택된 정도를 의미하며 연계된 상대조직의 중요성을 가중치를 주어 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즉, 위세중심성이 높은 조직은 네트워크에서 어느 정도 신뢰를 형성하고 있으면서 효율적인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세도의 일반적인 형태로 UCINET에서는 아이젠벡터(Eigenvec) 값을 사용한다. 위세중심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 강력범죄 피해자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 위세조직의 순위

순위	기관	Eigenvec	nEigenvec
1	경찰	0,618	87,359
2	범피센터	0,477	67,457
3	지자체	0,374	52,875
4	스마일	0,253	35,783
5	검찰청	0,25	35,395
6	대한법률구조공단	0,192	27,215
7	코바	0,182	25,807
8	1366	0,12	16,922
9	아동보호전문기관	0,094	13,281
10	성폭력상담소	0,091	12,858
11	여성상담소	0,09	12,761
12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해바라기)	0,088	12,424
13	홈닥터	0,07	9,9
14	법원	0,033	4,605
15	가정폭력상담소	0,03	4,223

타 조직으로부터 교환 관계의 요청을 받아 영향력을 발휘하는 위세중심조직은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 분석에서 나타난 중심 조직들이 순위 안에 대다수 포함되어 있다. 즉, 조직간 관계를 주도하는 조직 또는 매개적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 동시에 타 조직으로부터 교환 관계의 요청을 높게 받아 전체 네트워크 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강력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에서 경찰이 전체 네트워크 집단내 87.359%(Eigenvec: 0.618) 정도로 타 조직들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범죄피해자지원센터도 67.457%(Eigenvec: 0.477) 높은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지자체, 스마일, 검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으로 높은 순위로 나타났다.

제2절 성폭력 범죄피해자보호의 사회연결망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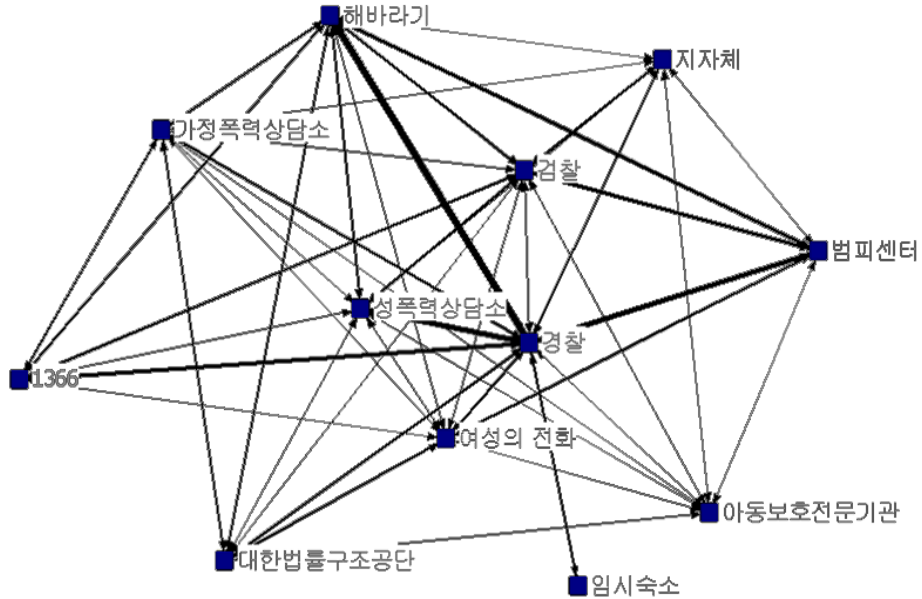
1. 성폭력 범죄피해자보호의 사회연결망 밀도

다음 <표 7>는 성폭력 범죄피해자보호의 협력 네트워크의 기술적 통계량이다. 성폭력 범죄피해자 보호의 협력 네트워크는 12개의 이해관계자 집단이 연결되어 있으며, 포괄성 비율은 1.0으로 모든 이해관계자 집단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의 밀도는 0.679으로 나타났으며, 밀도는 네트워크상의 모든 기관들이 연계를 가지고 있으면 1의 값을 가지며, 각 기관간 연계가 전혀 없으면 0의 값을 가지게 된다. 또한 네트워크 밀도 측정에서는 한기관이 다른 기관과의 관계횟수보다는 관계가 있으면 1로, 관계없으면 0으로 자료를 입력하여 분석을 하였다. 네트워크의 평균거리는 1.610로 나타났다.

<표 7> 성폭력 피해자보호의 협력 네트워크에 대한 기술통계량

영역	연결된 기관	포괄성 비율	평균 연결정도 합	네트워크 평균거리	밀도
성폭력	12	1.00	7.667	1.303	0.679

각 네트워크 별로 4가지 중심성의 측정과 소시오그램(SOCIOGRAM)의 상의 위치 확인을 통해 중심기관이 있을 때와 성폭력 피해자보호의 협력 네트워크 중심기관을 제거했을 때의 연결망을 제시하여 중심기관이 실제로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중심기관이 제거되었을 때 네트워크가 와해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림 5] 성폭력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

2. 성폭력 범죄피해자보호의 사회연결망 연결중심성

연결중심성 지표는 집단 내 관계가 활발한 조직과 그렇지 못한 조직과의 차이를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중심성값이 낮을수록 지역사회에서 특정 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연계의 집중이 낮고 높을수록 특정 조직의 연계 주도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성폭력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 연결중심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성폭력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는 경찰의 중심성이 35.417%(중심성값: 68.000)를 차지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해바라기가 22.917%(중심성값: 44.000)으로 나타났다. 그 외 검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여성의 전화 등의 순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표 8〉 성폭력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의 연결중심성

번호	순위	기관	Degree	NrmDegree	Share
1	1	경찰	68,000	35,417	0,219
7	2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해바라기)	44,000	22,917	0,142
2	3	검찰청	29,000	15,104	0,094
9	4	범피센터	27,000	14,063	0,087
4	5	성폭력상담소	27,000	14,063	0,087
5	6	가정폭력상담소	22,000	11,458	0,071
6	7	여성의 전화	22,000	11,458	0,071
3	8	1366	20,000	10,417	0,065
8	9	대한법률구조공단	19,000	9,896	0,061
10	10	지자체	15,000	7,813	0,048
11	11	아동보호전문기관	13,000	6,771	0,042
12	12	임시숙소	4,000	2,083	0,013

Network Centralization = 28.75%

3. 성폭력 범죄피해자보호의 사회연결망 인접중심성

인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은 연결망의 한 결점으로부터 다른 결점에 도달하려면 필요한 최소단계의 총합으로 정의된다. 연결망의 중앙에 놓일수록 이 숫자가 작아진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인접중심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성폭력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에서 경찰의 인접 중심성은 21.426%(거리값: 11.78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검찰이 3.245%(거리값: 1.785)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자체, 청예단,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교육청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접 중심성 분석결과를 통해서, 중심성이 가장 높았던 경찰을 제외한 다른 기관들과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의 인접성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의 인접중심성

번호	순위	기관	Farness	nCloseness
1	1	경찰	11,785	21,426
2	2	검찰청	1,785	3,245
7	3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해바라기)	1,460	2,654
6	4	여성의 전화	1,275	2,318
5	5	가정폭력상담소	1,001	1,820
4	6	성폭력상담소	1,001	1,820
11	7	아동보호전문기관	0,843	1,532
10	8	지자체	0,458	0,833
9	9	범피센터	0,268	0,487
8	10	대한법률구조공단	0,125	0,227
3	11	1366	0,000	0,000
12	12	임시숙소	0,000	0,000

Network Centralization = 45.99%

4. 성폭력 범죄피해자보호의 사회연결망 매개중심성

매개중심성은 상대조직을 통제할 수 있는 정도로서 한 조직이 다른 조직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서 중재자, 즉 매개 역할이 어느 정도인가를 측정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매개중심도가 높은 조직은 네트워크 구조에서 정보 및 자원의 흐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다른 조직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서 핵심적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조직이다. 매개중심성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매개중심 조직의 순위가 연결중심조직의 순위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성폭력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에서 경찰의 매개중심성이 21.426%(Betweenness: 11.785)로 전체적으로는 다소 낮지만 다른 기관들보다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매개중심성을 살펴보면, 경찰, 검찰, 해바라기, 여성의 전화,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소 매

개중심성이 낮은 이유는 성폭력에 대한 사회전반적인 인식은 증가되었지만, 여전히 성폭력의 범죄자체로서 은밀성 등에 의해서 다른 범죄의 피해유형과 비교해볼 때 협력적 네트워크의 구성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10〉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의 매개중심성

번호	순위	기관	매개중심성 Betweenness	표준화지수 nBetweenness
1	1	경찰	11,785	21,426
2	2	검찰청	1,785	3,245
7	3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해바라기)	1,460	2,654
6	4	여성의 전화	1,275	2,318
5	5	가정폭력상담소	1,001	1,820
4	6	성폭력상담소	1,001	1,820
11	7	이동보호전문기관	0,843	1,532
10	8	지자체	0,458	0,833
9	9	범피센터	0,268	0,487
8	10	대한법률구조공단	0,125	0,227
3	11	1366	0,000	0,000
12	12	임시숙소	0,000	0,000

Network Centralization Index = 20.07%

5. 성폭력 범죄피해자보호의 사회연결망 위세중심성

위세중심성은 타 조직들로부터 연계의 대상으로 선택된 정도를 의미하며 연계된 상대조직의 중요성을 가중치를 주어 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즉, 위세중심성이 높은 조직은 네트워크에서 어느 정도 신뢰를 형성하고 있으면서 효율적인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세도의 일반적인 형태로 UCINET에서는 아이젠벡터(Eigenvec) 값을 사용한다. 위세중심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1〉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의 위세중심성

순위	기관	Eigenvec	nEigenvec
1	경찰	0.565	79,834
2	검찰청	0.244	34,508
3	1366	0.238	33,591
4	성폭력상담소	0.288	40,796
5	가정폭력상담소	0.209	29,539
6	여성의 전화	0.212	29,976
7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해바라기)	0.468	66,120
8	대한법률구조공단	0.193	27,328
9	범피센터	0.309	43,720
10	지자체	0.162	22,943
11	아동보호전문기관	0.107	15,069
12	임시숙소	0.066	9,403

Network centralization index = 68.35%

타 조직으로부터 교환 관계의 요청을 받아 영향력을 발휘하는 위세중심조직은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 분석에서 나타난 중심 조직들이 순위 안에 대다수 포함되어 있다. 즉, 조직간 관계를 주도하는 조직 또는 매개적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 동시에 타 조직으로부터 교환 관계의 요청을 높게 받아 전체 네트워크 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성폭력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에서 경찰이 전체 네트워크 집단 내 79.834%(Eigenvec: 0.565) 정도로 타 조직들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검찰은 34.508%(Eigenvec: 0.244)로 경찰에 비해 절반 위세중심성의 낮은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1366,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여성의전화, 해바라기 등으로 높은 순위로 나타났다.

제3절 가정폭력 범죄피해자보호의 사회연결망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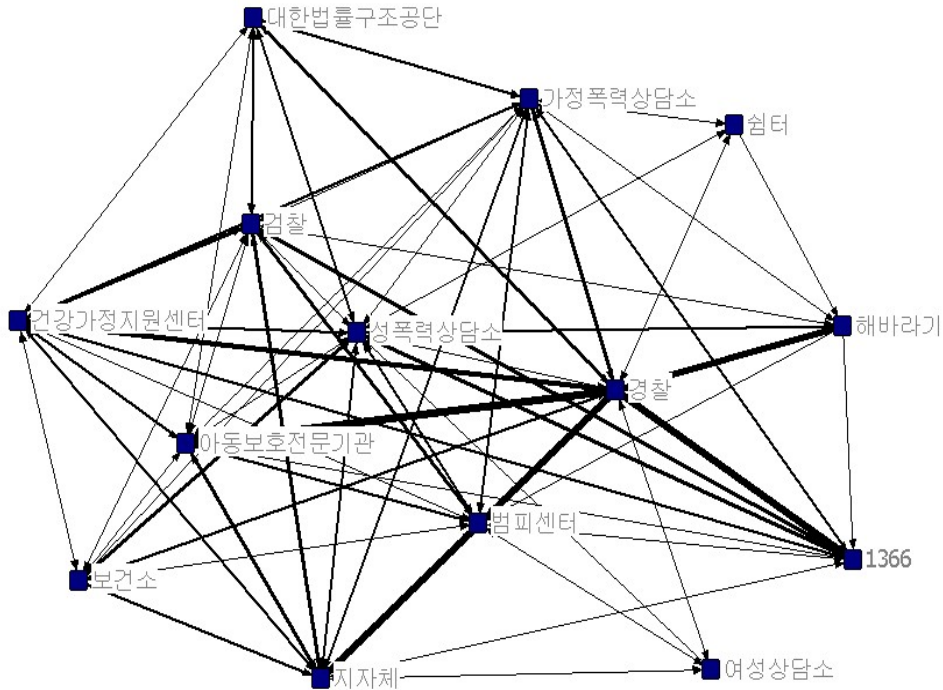
1. 가정폭력 범죄피해자보호의 사회연결망 밀도

다음 <표 12>은 가정폭력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의 기술적 통계량이다. 가정폭력 네트워크는 14개의 이해관계자 집단이 연결되어 있으며, 포괄성 비율은 1.0으로 모든 이해관계자 집단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의 밀도는 0.665로 나타났으며, 밀도는 네트워크 상의 모든 기관들이 연계를 가지고 있으면 1의 값을 가지며, 각 기관간 연계가 전혀 없으면 0의 값을 가지게 된다. 또한 네트워크 밀도 측정에서는 한기관이 다른 기관과의 관계횟수보다는 관계가 있으면 1로 관계없으면 0으로 자료를 입력하여 분석을 하였다. 네트워크의 평균거리는 1.335로 나타났다.

<표 12> 가정폭력 범죄피해자 보호 협력네트워크 기술통계량

영역	연결된 기관	포괄성 비율	평균 연결정도 합	네트워크 평균거리	밀도
가정폭력	14	1.000	8,643	1,335	0.665

각 네트워크 별로 4가지 중심성의 측정과 소시오그램(SOCIOGRAM)의 상의 위치 확인을 통해 중심기관이 있을 때와 가정폭력 범죄피해자 보호의 중심기관을 제거했을 때의 연결망을 제시하여 중심기관이 실제로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중심기관이 제거되었을 때 네트워크가 와해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림 6]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

2. 가정폭력 범죄피해자보호의 사회연결망 연결중심성

연결중심성 지표는 집단 내 관계가 활발한 조직과 그렇지 못한 조직과의 차이를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중심성값이 낮을수록 지역사회에서 특정 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연계의 집중이 낮고 높을수록 특정 조직의 연계 주도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가정폭력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 연결중심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정폭력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는 경찰의 중심성이 43.452%(중심성값: 73.00)를 차지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지자체가 27.381%(중심성값: 46.00)으로 경찰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 외 1366, 범죄피센터, 성폭력상담소, 검찰, 가정폭력상담소 등의 순으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가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가정폭력 범죄피해자 보호 협력네트워크의 연결정도 중심성

번호	순위	기관	Degree	NrmDegree	Share
1	1	경찰	73,000	43,452	0,172
6	2	지자체	46,000	27,381	0,108
12	3	1366	36,000	21,429	0,085
10	4	범피센터	35,000	20,833	0,083
3	5	성폭력상담소	35,000	20,833	0,083
2	6	검찰청	33,000	19,643	0,078
4	7	가정폭력상담소	33,000	19,643	0,078
7	8	건강가정지원센터	33,000	19,643	0,078
5	9	아동보호전문기관	32,000	19,048	0,075
8	10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해바라기)	21,000	12,500	0,050
13	11	보건소	19,000	11,310	0,045
9	12	대한법률구조공단	16,000	9,524	0,038
11	13	여성상담소	6,000	3,571	0,014
14	14	쉼터	6,000	3,571	0,014

Network Centralization = 31.94%

Blau Heterogeneity = 9.24%. Normalized (IQV) = 2.26%

3. 가정폭력 범죄피해자보호의 사회연결망 인접중심성

인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은 연결망의 한 결점으로부터 다른 결점에 도달하려면 필요한 최소단계의 총합으로 정의된다. 연결망의 중앙에 놓일수록 이 숫자가 작아진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가정폭력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의 인접중심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정폭력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에서 경찰의 인접 중심성은 84.211%(거리값: 19.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검찰이 80.000%(거리값: 20.00)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에 아동보호전문기

관, 지자체, 청예단,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접중심성 분석결과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인접중심성이 높은 편이어서 다른 이해관계자의 기관들과 직·간접적으로 근접해 있으면서 관계요청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심성이 가장 높았던 경찰과 검찰이 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가정폭력 강력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의 인접중심성

번호	순위	기관	Farness	nCloseness
1	1	경찰	19,000	84,211
2	2	검찰청	20,000	80,000
7	3	성폭력상담소	23,000	69,565
5	4	가정폭력상담소	23,000	69,565
15	5	아동보호전문기관	23,000	69,565
6	6	지자체	24,000	66,667
3	7	건강가정지원센터	24,000	66,667
9	8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해바라기)	26,000	61,538
12	9	대한법률구조공단	27,000	59,259
8	10	범피센터	27,000	59,259
10	11	여성상담소	27,000	59,259
13	12	1366	27,000	59,259
14	13	보건소	28,000	57,143
4	14	쉼터	29,000	55,172
11	15	아동보호전문기관	29,000	55,172

4. 가정폭력 범죄피해자보호의 사회연결망 매개중심성

매개중심성은 상대조직을 통제할 수 있는 정도로서 한 조직이 다른 조직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서 중재자, 즉 매개 역할이 어느 정도인가를 측정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매개중심도가 높은 조직은 네트워크 구조에서 정보 및 자원의 흐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다른 조직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서 핵심적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조직이다. 매개중심성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매개중심 조직의 순위가 다선중심조직의 순위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정폭력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에서 경찰의 매개중심성이 10.776%(Betweenness: 16.811)로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매개중심성을 살펴보면,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자체, 검찰 순의 값을 보였다. 경찰이 매개중심성이 높은 이유는 경찰이 가정폭력 범죄피해자들이 경찰에 대한 접근성이 쉽다는 것과 평상시 경찰에서의 가정폭력 범죄피해자에 대한 제보 및 범죄예방에 대한 캠페인 등을 통하여 대중적으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정폭력 사건발생시 비교적 신속한 대응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다른 직접적인 기관들과 폭넓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 외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등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지역사회를 거점으로 한 이미 많은 정책시행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관들과 협의하는 매개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정부의 관련 하위기관들과 평소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네트워크 내에서 다른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실질적인 ‘다리’ 역할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기관 영역의 네트워크 형성이 어느 정도 긴밀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5〉 가정폭력 강력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의 매개 중심성

번호	순위	기관	매개중심성 Betweenness	표준화지수 nBetweenness
1	1	경찰	16,811	10,776
3	2	성폭력상담소	12,358	7,922
4	3	가정폭력상담소	10,594	6,791
10	4	범피센터	5,894	3,778
6	5	지자체	4,694	3,009
2	6	검찰청	4,561	2,924
5	7	이동보호전문기관	1,977	1,268
7	8	건강가정지원센터	1,977	1,268
8	9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해바라기)	1,033	0,662
12	10	1366	0,700	0,449
9	11	대한법률구조공단	0,200	0,128
13	12	보건소	0,200	0,128
11	13	여성상담소	0,000	0,000
14	14	쉼터	0,000	0,000
14	15	1366	1,465	0,805

Network Centralization Index = 8.60%

5. 가정폭력 범죄피해자보호의 사회연결망 위세중심성

위세중심성은 타 조직들로부터 연계의 대상으로 선택된 정도를 의미하며 연계된 상대조직의 중요성을 가중치를 주어 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즉, 위세중심성이 높은 조직은 네트워크에서 어느 정도 신뢰를 형성하고 있으면서 효율적인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세도의 일반적인 형태로 UCINET에서는 아이젠벡터(Eigenvec) 값을 사용한다. 위세중심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6〉 가정폭력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의 위세중심성

순위	기관	Eigenvec	nEigenvec
1	경찰	0,510	72,118
2	검찰청	0,237	33,518
3	성폭력상담소	0,234	33,095
4	가정폭력상담소	0,257	36,304
5	아동보호전문기관	0,299	42,226
6	지자체	0,370	52,370
7	건강가정지원센터	0,276	39,090
8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해바라기)	0,189	26,729
9	대한법률구조공단	0,139	19,644
10	범피센터	0,267	37,711
11	여성상담소	0,053	7,468
12	1366	0,324	45,857
13	보건소	0,157	22,161
14	쉼터	0,043	6,052
15	아동보호전문기관	0,094	13,281

Network centralization index = 56.98%

‘가정폭력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에서 경찰이 전체 네트워크 집단내 87.359%(Eigenvec: 0.510) 정도로 타 조직들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그 다음 검찰은 33.518%(Eigenvec: 0.237) 경찰에 비해서 절반 수준의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자체 등의 위세중심성 순위로 나타났다.

제4절 학교폭력 범죄피해자보호의 사회연결망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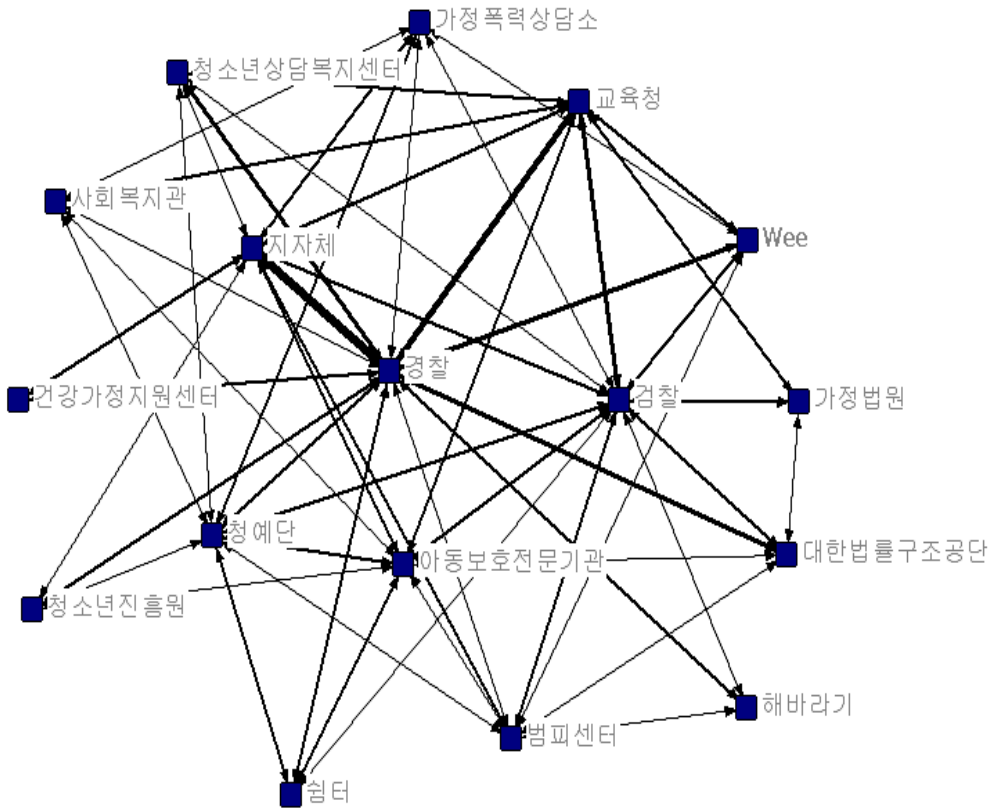
1. 학교폭력 범죄피해자보호의 사회연결망 밀도

다음으로 <표 17>은 학교폭력 범죄피해자 보호의 협력 네트워크의 기술적 통계량이다. 학교폭력 범죄피해자 보호의 협력 네트워크는 17개의 이해관계자 집단이 연결되어 있으며, 포괄성 비율은 1.0으로 모든 이해관계자 집단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의 밀도는 0.404으로 나타났으며, 밀도는 네트워크 상의 모든 기관들이 연계를 가지고 있으면 1의 값을 가지며, 각 기관간 연계가 전혀 없으면 0의 값을 가지게 된다. 또한 네트워크 밀도 측정에서는 한기관이 다른 기관과의 관계횟수보다는 관계가 있으면 1로 관계없으면 0으로 자료를 입력하여 분석을 하였다. 네트워크의 평균거리는 1.610로 나타났다.

<표 17> 학교폭력 피해자보호의 협력 네트워크에 대한 기술통계량

영역	연결된 기관	포괄성 비율	평균 연결정도 합	네트워크 평균거리	밀도
학교폭력	17	1.00	6.471	1.610	0.404

각 네트워크 별로 4가지 중심성의 측정과 소시오그램(SOCIOGRAM)의 상의 위치 확인을 통해 중심기관이 있을 때와 학교폭력 범죄피해자 보호의 협력 네트워크 중심기관을 제거했을 때의 연결망을 제시하여 중심기관이 실제로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중심기관이 제거되었을 때 네트워크가 와해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림 7] 학교폭력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

2. 학교폭력 범죄피해자 보호의 사회연결망 연결중심성

연결중심성 지표는 집단 내 관계가 활발한 조직과 그렇지 못한 조직과의 차이를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중심성값이 낮을수록 지역사회에서 특정 조직을 중심으로 하는 연계의 집중이 낮고 높을수록 특정 조직의 연계 주도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연결중심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폭력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는 경찰의 중심성이 28.105%(중심성값: 43.00)를 차지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검찰이 16.340%(중심성값: 25.000)으로 경찰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 외 교육청,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예단 등의 순으로 대체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 네트워크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8〉 학교폭력 범죄피해자보호 협력네트워크의 연결정도 중심성

번호	순위	기관	Degree	NrmDegree	Share
1	1	경찰	43,000	28,105	0,185
2	2	검찰청	25,000	16,340	0,108
3	3	교육청	25,000	16,340	0,108
5	4	지자체	24,000	15,686	0,103
7	5	아동보호전문기관	15,000	9,804	0,065
15	6	청예단	15,000	9,804	0,065
12	7	Wee	11,000	7,190	0,047
6	8	범피센터	11,000	7,190	0,047
8	9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1,000	7,190	0,047
13	10	대한법률구조공단	11,000	7,190	0,047
14	11	쉼터	9,000	5,882	0,039
9	12	가정폭력상담소	8,000	5,229	0,034
16	13	사회복지관	6,000	3,922	0,026
4	14	청소년진흥원	5,000	3,268	0,022
10	16	건강가정지원센터	4,000	2,778	0,210
17	17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해바라기)	4,000	2,778	0,204

Network Centralization = 23.10%

Blau Heterogeneity = 9.05%. Normalized (IQV) = 3.37%

3. 학교폭력 범죄피해자보호의 사회연결망 인접중심성

인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은 연결망의 한 결점으로 부터 다른 결점에 도달 하려면 필요한 최소단계의 총합으로 정의된다. 연결망의 중앙에 놓일수록 이 숫자 가 작아진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인접중심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폭력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에서 경찰의 인접 중심성은 84.211%(거리값: 19.00)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검찰이 80.000%(거리값: 20.00)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에 교육청,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예단, Wee센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접 중심성 분석결과를 통해서, 중심성이 가장 높았던 경찰을 비롯해서 학교와 관련된 유 관기관들은 대부분 정부의 주요 집행기관들로서 상당히 상호간의 유기적이고 친밀적 으로 업무 등을 수행함으로써 그들과 직·간접적으로 근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학교폭력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의 인접 중심성

번호	순위	기관	Farness	nCloseness
1	1	경찰	19.000	84.211
2	2	검찰청	20.000	80.000
7	3	아동보호전문기관	23.000	69.565
5	4	지자체	23.000	69.565
15	5	청예단	23.000	69.565
6	6	범피센터	24.000	66.667
3	7	교육청	24.000	66.667
9	8	가정폭력상담소	26.000	61.538
12	9	Wee	27.000	59.259
8	10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7.000	59.259
16	11	사회복지관	27.000	59.259
13	12	대한법률구조공단	27.000	59.259
14	13	쉼터	28.000	57.143
4	14	청소년진흥원	29.000	55.172
11	15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해바라기)	29.000	55.172
10	16	건강가정지원센터	31.000	51.613
17	17	가정법원	31.000	51.613

Network Centralization = 45.99%

4. 학교폭력 범죄피해자보호의 사회연결망 매개중심성

매개중심성은 상대조직을 통제할 수 있는 정도로서 한 조직이 다른 조직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서 중재자, 즉 매개 역할이 어느 정도인가를 측정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매개중심도가 높은 조직은 네트워크 구조에서 정보 및 자원의 흐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다른 조직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서 핵심적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조직이다. 매개중심성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매개중심 조직의 순위가 연결중심조직의 순위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학교폭력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에서 경찰의 매개중심성이 22.341%(Betweenness: 26.810)로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매개중심성을 살펴보면, 경찰, 검찰, 지자체, 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매개중심성이 높은 이유는 경찰이 과거 학교와 관련된 폭력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으며, 학교폭력 전담경찰관 제도를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 피해자인 학생 본인과 학부모에 대한 접근이 비교적 용이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매개중심성 분석에서도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유관기관들이 대체로 정부산하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관의 협조가 원활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의 가능성에 대한 가해자들에 대한 사전조사가 간헐적으로 평상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무수행에 있어서 다른 직접적인 기관들과 폭넓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0〉 학교폭력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의 매개중심성

번호	순위	기관	매개중심성 Betweenness	표준화지수 nBetweenness
1	1	경찰	26.810	22.341
2	2	검찰청	18.351	15.293
5	3	지자체	8.658	7.215
3	4	교육청	6.717	5.597
7	5	아동보호전문기관	6.668	5.557
15	6	청예단	5.633	4.694
6	7	범피센터	3.818	3.182

번호	순위	기관	매개중심성 Betweenness	표준화지수 nBetweenness
13	8	대한법률구조공단	2,058	1,715
9	9	가정폭력상담소	1,526	1,272
16	10	사회복지관	0,775	0,646
12	11	Wee	0,700	0,583
8	1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0,443	0,369
4	13	청소년진흥원	0,268	0,223
17	14	가정법원	0,250	0,208
14	15	쉼터	0,225	0,188

Network Centralization Index = 19.41%

5. 학교폭력 범죄피해자보호의 사회연결망 위세중심성

위세중심성은 타 조직들로부터 연계의 대상으로 선택된 정도를 의미하며 연계된 상대조직의 중요성을 가중치를 주어 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즉, 위세중심성이 높은 조직은 네트워크에서 어느 정도 신뢰를 형성하고 있으면서 효율적인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세도의 일반적인 형태로 UCINET에서는 아이젠벡터(Eigenvec) 값을 사용한다. 위세중심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1〉 학교폭력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의 위세중심성

순위	기관	Eigenvec	nEigenvec
1	경찰	0.545	77,103
2	검찰청	0.291	41,208
3	교육청	0.387	54,706
4	청소년진흥원	0.094	13,279
5	지자체	0.401	56,667
6	범피센터	0.162	22,905
7	아동보호전문기관	0.178	25,125
8	청소년상담복지센터	0.242	34,239

순위	기관	Eigenvec	nEigenvec
9	가정폭력상담소	0,117	16,513
10	건강가정지원센터	0,096	13,627
11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해바라기)	0,079	11,120
12	Wee	0,214	30,274
13	대한법률구조공단	0,205	28,952
14	쉼터	0,143	20,236
15	청예단	0,175	24,698

Network centralization index = 68.00%

타 조직으로부터 교환 관계의 요청을 받아 영향력을 발휘하는 위세중심조직은 연결중심성과 매개중심성 분석에서 나타난 중심 조직들이 순위 안에 대다수 포함되어 있다. 즉, 조직간 관계를 주도하는 조직 또는 매개적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 동시에 타 조직으로부터 교환 관계의 요청을 높게 받아 전체 네트워크 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학교폭력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에서 경찰이 전체 네트워크 집단내 77.103%(Eigenvec: 0.545) 정도로 타 조직들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검찰은 41.208%(Eigenvec: 0.291)로 경찰에 비해 절반 위세중심성의 낮은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교육청, 청소년진흥원, 지자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으로 높은 순위로 나타났다.

제5절 전반적인 범죄피해자보호의 사회연결망 분석

1. 전반적인 범죄피해자보호의 사회연결망 밀도

다음 <표 22>는 범죄피해자 보호의 협력 네트워크의 기술적 통계량이다. 범죄피해자 보호의 협력 네트워크는 27개의 이해관계자 집단이 연결되어 있으며, 포괄성 비율은 1.0으로 모든 이해관계자 집단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의 밀도는 0.365로 나타났으며, 밀도는 네트워크 상의 모든 기관들이 연계를 가지고 있으면 1의 값을 가지며, 각 기관간 연계가 전혀 없으면 0의 값을 가지게 된다. 또한 네트워크 밀도 측정에서는 한기관이 다른 기관과의 관계횟수보다는 관계가 있으면 1로 관계없으면 0으로 자료를 입력하여 분석을 하였다. 네트워크의 평균거리는 1.662로 나타났다.

<표 22> 범죄피해자 보호의 협력 네트워크에 대한 기술통계량

영역	연결된 기관	포괄성 비율	평균 연결정도 합	네트워크 평균거리	밀도
전반적	27	1.00	9,481	1,662	0,365

각 네트워크 별로 4가지 중심성의 측정과 소시오그램(SOCIOGRAM)의 상의 위치 확인을 통해 중심기관이 있을 때와 범죄피해자 피해자보호의 협력 네트워크 중심기관을 제거했을 때의 연결망을 제시하여 중심기관이 실제로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중심기관이 제거되었을 때 네트워크가 와해되는지를 알 수 있다.

10.721%(중심성 값: 110.000)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지자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해바라기, 성폭력상담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23〉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의 연결정도 중심성

번호	순위	기관	Degree	NrmDegree	Share
1	1	경찰	244,000	23,782	0,200
7	2	검찰	110,000	10,721	0,090
4	3	지자체	109,000	10,624	0,089
3	4	범피센터	95,000	9,259	0,078
8	5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해바라기)	78,000	7,602	0,064
6	6	성폭력상담소	73,000	7,115	0,060
15	7	아동보호전문기관	70,000	6,823	0,057
13	8	가정폭력상담소	70,000	6,823	0,057
14	9	1366	67,000	6,530	0,055
12	10	대한법률구조공단	64,000	6,238	0,052
18	11	건강가정지원센터	34,000	3,314	0,028
2	12	스마일	25,000	2,437	0,020
21	13	교육청	25,000	2,437	0,020
5	14	여성상담소	24,000	2,339	0,020
16	15	여성의 전화	21,000	2,047	0,017
25	16	청예단	15,000	1,462	0,012
9	17	코바	15,000	1,462	0,012
20	18	쉼터	13,000	1,267	0,011
23	19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1,000	1,072	0,009
19	20	보건소	11,000	1,072	0,009
24	21	Wee	10,000	0,975	0,008
11	22	홀닥터	9,000	0,877	0,007
26	23	사회복지센터	8,000	0,780	0,007
17	24	임시숙소	7,000	0,682	0,006
10	25	법원	6,000	0,585	0,005
22	26	청소년진흥원	5,000	0,487	0,004
27	27	가정법원	3,000	0,292	0,002

Network Centralization = 21.72%

Blau Heterogeneity = 8.50%. Normalized (IQV) = 4.98%

3. 전반적인 범죄피해자보호의 사회연결망 인접중심성

인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은 연결망의 한 결점으로 부터 다른 결점에 도달하려면 필요한 최소단계의 총합으로 정의된다. 연결망의 중앙에 놓일수록 이 숫자가 작아진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의 인접중심성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에서 경찰의 인접 중심성은 97.436%(거리값: 2.923)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검찰이 92.308%(거리값: 2.769)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에 가정폭력,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자체, 범피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접 중심성 분석결과를 통해서, 중심성이 가장 높았던 경찰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공공과 민간기관들이 업무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근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의 인접중심성

번호	순위	기관	Farness	nCloseness
1	1	경찰	2,923	97.436
7	2	검찰청	2,769	92.308
13	3	가정폭력상담소	2,731	91.026
15	4	아동보호전문기관	2,654	88.462
6	5	성폭력상담소	2,615	87.179
4	6	지자체	2,615	87.179
3	7	범피센터	2,577	85.897
12	8	대한법률구조공단	2,500	83.333
8	9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해바라기)	2,385	79.487
18	10	건강가정지원센터	2,346	78.205
14	11	1366	2,308	76.923
21	12	교육청	2,308	76.923
16	13	여성의 전화	2,308	76.923
5	14	여성상담소	2,308	76.923

번호	순위	기관	Farness	nCloseness
25	15	청예단	2,308	76.923
2	16	스마일	2,269	75.641
26	17	사회복지센터	2,231	74.359
11	18	홈닥터	2,192	73.077
19	19	보건소	2,192	73.077
20	20	쉼터	2,192	73.077
24	21	Wee	2,192	73.077
23	2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154	71.795
9	23	코바	2,115	70.513
22	24	청소년진흥원	2,115	70.513
17	25	임시숙소	2,077	69.231
10	26	법원	2,077	69.231
27	27	가정법원	1,769	58.974

Network Centralization = 62.77%

4. 전반적인 범죄피해자보호의 사회연결망 매개중심성

매개중심성은 상대조직을 통제할 수 있는 정도로서 한 조직이 다른 조직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서 중재자, 즉 매개 역할이 어느 정도인가를 측정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매개중심도가 높은 조직은 네트워크 구조에서 정보 및 자원의 흐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다른 조직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서 핵심적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조직이다. 매개중심성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매개중심 조직의 순위가 연결중심조직의 순위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에서 경찰의 매개중심성이 20.023%(Betweenness: 130.147)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매개 중심성을 살펴보면, 경찰, 검찰, 가정폭력, 아동보호전문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경찰이 매개중심성이 높은 이유는 사람의 생명과 보호라는 법적 및 국가적 목적달성을 위해 경찰의 역할을 다하고 있고, 이를 위해 다른 직접적인 기관들과 사회의 광범위하게 연계되어 매개적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표 25〉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의 매개중심성

번호	순위	기관	매개중심성 Betweenness	표준화지수 nBetweenness
1	1	경찰	130,147	20,023
7	2	검찰청	60,759	9,348
13	3	가정폭력상담소	53,935	8,298
15	4	아동보호전문기관	52,315	8,049
12	5	대한법률구조공단	36,620	5,634
4	6	지자체	36,186	5,567
3	7	범피센터	24,704	3,801
21	8	교육청	21,331	3,282
6	9	성폭력상담소	21,204	3,262
25	10	청예단	7,575	1,165
18	11	건강가정지원센터	4,600	0,708
8	12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해바라기)	3,359	0,517
5	13	여성상담소	2,661	0,409
9	14	코바	1,875	0,288
10	15	법원	1,500	0,231
14	16	1366	1,355	0,208
26	17	사회복지센터	0,933	0,144
23	18	청소년상담복지센터	0,886	0,136
2	19	스마일	0,752	0,116
24	20	Wee	0,733	0,113
27	21	가정법원	0,500	0,077
16	22	여성의 전화	0,450	0,069
20	23	쉼터	0,333	0,051
22	24	청소년진흥원	0,286	0,044
19	25	보건소	0,000	0,000
17	26	임시숙소	0,000	0,000
11	27	홈닥터	0,000	0,000

Network Centralization Index = 18.04%

5. 전반적인 범죄피해자보호의 사회연결망 위세중심성

위세중심성은 타 조직들로부터 연계의 대상으로 선택된 정도를 의미하며 연계된 상대조직의 중요성을 가중치를 주어 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즉, 위세중심성이 높은 조직은 네트워크에서 어느 정도 신뢰를 형성하고 있으면서 효율적인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세도의 일반적인 형태로 UCINET에서는 아이젠벡터(Eigenvec) 값을 사용한다. 위세중심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6〉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의 위세중심성

순위	기관	Eigenvec	nEigenvec
1	경찰	0.565	79,927
2	지자체	0.375	53,048
3	범피센터	0.34	48,027
4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해바라기)	0.295	41,679
5	검찰청	0.269	38,054
6	1366	0.234	33,095
7	대한법률구조공단	0.211	29,824
8	성폭력상담소	0.205	28,932
9	가정폭력	0.197	27,853
10	아동보호전문기관	0.189	26,787
11	건강가정지원센터	0.119	16,807
12	스마일	0.096	13,552
13	여성의 전화	0.072	10,162
14	여성상담소	0.065	9,18
15	교육청	0.064	9,028
16	코바	0.057	8,12
17	보건소	0.043	6,148
18	쉼터	0.039	5,548
19	청소년상담복지센터	0.039	5,447

순위	기관	Eigenvec	nEigenvec
20	Wee	0.034	4.802
21	청예단	0.033	4.72
22	임시숙소	0.028	3.962
23	홈닥터	0.027	3.878
24	청소년진흥원	0.018	2.548
25	사회복지센터	0.017	2.433
26	법원	0.011	1.519
27	가정법원	0.004	0.499

Network centralization index = 78.58%

‘전반적인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네트워크’에서 경찰이 전체 네트워크 집단내 79.927%(Eigenvec: 0.565) 정도로 타 조직들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검찰은 53.048.(Eigenvec: 0.375)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지자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해바라기, 검찰, 1366,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으로 높은 순위로 나타났다.

제5장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협력체계의 개선방안

우리나라는 범죄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하는 관련된 기관들이 매우 많으며, 그 성격 또한 다양하다. 이러한 유관기관들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단순히 업무 협력 계약으로는 효과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어렵다. 이에 보다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기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안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다.

제1절 범죄피해자 보호 협력네트워크상에서 역할 확대

범죄피해자 보호와 관련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함에 있어서, 모든 관련 기관들은 수평적 관계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담당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유관 기관들 간의 협력네트워크에서 다급성을 요구하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일선 현장에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유관기관들을 지원하는 역할(Hub)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연결망분석을 통해 행위자(노드)와 행위자(노드) 사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중심조직을 파악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연결중심성의 결과를 살펴 볼 수 있다. 연결중심성은 특정 기관이 네트워크 내에서 다른 기관과 얼마나 활발한 연계활동을 했는지를 알아 볼 수 있으며, 인접중심성은 한 기관과 다른 기관 사이의 거리를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인접중심성이 높을수록 정보, 영향력, 지위에 대한 확보와 접근이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와 같이, 강력범죄,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다양한 범죄유형에서 경찰은 협력네트워크 상 연결중심성이 타 기관에 비해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되었다. 또한, 협력네트워크에서 중심 기관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로 사용될 수 있는 매개중심성과 위세중심성 결과 또한 경찰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현장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서비스 공급주체들 간의 협력 네트워크의 연결중심성 분석을 고려한다면, 경찰조직이 일선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서비스의 다양한 지원자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경찰이 서비스 지원현장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협력네트워크의 지원자 역할을 수행한다면 다음과 같은 이점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경찰의 기본적 단위로서 전국 251개 지역에 경찰서가 분포되어 있어, 범죄피해자 보호의 능동적인 기관으로서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찰은 1년 365일, 24시간 특정범죄에 치우치지 않고, 강력범죄를 비롯한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재산범죄 등 모든 범죄유형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수사 및 범죄피해자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국가기관 및 민간단체는 여성·아동·노인 등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나,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 등 특정 범죄유형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기관이 대부분이다. 그 외에는 전문적 지원영역으로 심리적 상담 및 치료를 위한 기관들이다. 이러한 지원기관들은 이와 관련된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전문적일 순 있으나, 특정 분야에 한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경찰은 모든 범죄의 피해자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원 및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유관기관들과 지원 협력 체계에 있어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연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

둘째, 최근 범죄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시 되고 있다. 지역사회 구성원을 통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지자체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협력네트워크의 핵심이 경찰과 지자체 그리고 지역 내의 다양한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인 연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찰서가 지자체와 동일한 관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를 기존에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경찰이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셋째, 경찰은 형사사법 분야의 최일선 기관으로 대부분의 범죄피해자를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기관이다. 범죄 피해가 발생하고 바로 신속하게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효과적인 보호와 지원 및 연

계를 위해서는 경찰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협력네트워크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2절 범죄피해자 보호 협력네트워크의 협력대상

경찰은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과 관련하여 협력네트워크 구축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며, 지역 내의 협력네트워크의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동종분야나 동종분과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기관이 해당한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의 유형에 따라 여성·아동·장애인·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피해 유형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 및 일반 강력범죄, 재산범죄 등과 관련된 협력단체의 모든 기관들이 포함된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연결망분석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행위자와 행위자간의 연결된 수를 측정하는 인접중심성 통하여 범죄피해자 협력네트워크 상의 주요 대상을 찾아 볼 수 있다. <표 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총 15개의 기관이 협력네트워크 내의 행위자로 있었으며, 경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검찰, 지자체, 스마일 등의 순위로 인접중심성이 높게 나타났다. 성폭력의 경우에는 총 12개의 기관이 협력네트워크 내의 행위자로 있었으며, 경찰, 검찰, 해바라기, 여성의 전화, 가정폭력상담소 등의 순위로 인접중심성이 높게 나타났다.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총 15개의 기관이 협력네트워크 내의 행위자로 있었으며, 경찰, 검찰,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순위로 인접중심성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총 17개의 기관이 협력네트워크 내의 행위자로 있었으며, 경찰, 검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자체, 청예단 등의 순위로 인접중심성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범죄유형과 상관없이 경찰이 행위자간의 연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검찰 순으로 나타났다.

〈표 27〉 범죄유형별 인접중심성 결과

순위	강력범죄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1	경찰	경찰	경찰	경찰
2	범피센터	검찰청	검찰청	검찰청
3	검찰청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	성폭력상담소	아동보호전문기관
4	지자체	여성의 전화	가정폭력상담소	지자체
5	스마일	가정폭력상담소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예단
6	성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지자체	범피센터
7	여성상담소	아동보호전문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교육청
8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자체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	가정폭력상담소
9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	범피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Wee
10	홈닥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범피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1	아동보호전문기관	1366	여성상담소	사회복지관
12	가정폭력상담소	임시숙소	1366	대한법률구조공단
13	1366		보건소	쉼터
14	코바		쉼터	청소년진흥원
15	법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
16				건강가정지원센터
17				가정법원

강력범죄,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의 범죄유형에 모두 연결된 유관기관은 경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검찰, 지자체,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아동보호전문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해바라기 등으로 나타나, 다양한 범죄에서 상호간의 협력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별 범죄에서만 협력관계가 나타난 기관을 살펴보면, 강력범죄의 경우 스마일센터, 홈닥터, 코바 등이 있었으며, 성폭력의 경우 임시숙소가 있었다. 가정폭력의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 보건소, 쉼터 등이 있었으며,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청예단, 교육청,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회

복지관, 청소년진흥원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범죄유형에 따라 협력관계의 기관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협력네트워크의 유관기관간의 연결이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도시의 경우 비교적 다양한 기관들이 협력관계를 맺고 있었으나, 중·소도시 그리고 농·어촌 지역으로 갈수록 협력기관의 수가 급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해바라기센터는 충남지역에 1개소가 운영되고 있어, 원거리에 있는 경우 이동에 많은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우, 지역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있어서 차등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있어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차별화 된 협력네트워크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역적 차별화를 하는 경우에도 범죄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을 위해서 상담, 의료, 법률, 경제, 주거, 복지 등에 대한 협력관계는 최소한의 요건으로 구성하여 서비스의 연계를 지속시켜야 할 것이다.

유관기관들은 제공 가능한 전문가적 서비스를 중심으로 유형화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피해자와 혹은 기관과 연계될 지원기관은 달라진다.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 정신질환적 스트레스가 심하여 정신적 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도의 정신건강증진센터 혹은 대학병원을 연계할 수 있다. 또는 피해자에게 사건내용에 대한 인지와 법률적 상담이 필요한 경우, 지역 내의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법사랑위원, 법률홈닥터 등의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 충분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지자체의 사회복지과 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연계로 금전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구성 기관들은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를 인정하고 자율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이는 범죄피해자가 갖는 개별적인 상황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협력네트워크의 구성에 있어서,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한다. 특히 주무기관에 따라 성격이 매우 달라 연계하여 지원하는데 있어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있어 경찰의 중립적인 역할과 방향성이 필요하다.

분석결과에서도 나와 있듯이, 경찰과 검찰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한 협력네트워크망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찰과 검찰 양기관의 협력관계는 타기관들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선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공무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별 사건 유형에 따라 어떠한 협력기관을 연계해야 범죄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하였다. 따라서, 지역적 특성에 따라 협력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일선 현장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연계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 협력기관 매뉴얼”을 지방청 단위로 제작하여 배포할 필요가 있다.

제3절 범죄피해자 보호 협력네트워크에서의 경찰 역할

범죄피해자 보호 협력네트워크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다양한 유관기관들이 협력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연결이다. 이러한 협력네트워크는 서로 수평적인 관계를 가지며, 지원내용을 조정하고, 각 기관 간에 중복된 업무를 방지하며, 타기관에 지원을 의뢰하고,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등 서비스 제공에 대한 연계체계를 확립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범죄피해자 지원 서비스네트워킹 하는 것이고, 이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 유관기관들의 커뮤니케이션과 협조적인 연계역할이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연결망분석을 통해, 다른 기관들과 서로 연계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매개 혹은 중개자적 역할의 정도를 측정하는 매개중심성과 타기관으로부터 연계의 대상으로 선택된 정도를 측정하는 위세중심성의 결과를 살펴 볼 수 있다. 매개중심성과 위세중심성이 높다는 것은 네트워크 내의 의사소통의 흐름에 효과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와 같이, 강력범죄,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다양한 범죄유형에서 경찰은 협력네트워크 상 매개중심성과 위세중심성이 타 기관에 비해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찰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협력네트워크에서 허브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있어서 그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범죄피해자와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2차 범죄 및 보복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와 관련된 부분이며, 두 번째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심리·경제·의료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일 것이다.

경찰이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앞서 언급된 다양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경찰의 한정된 인력과 물자 그리고 예산상의 문제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경찰을 제외한 범죄피해자 관련 유관기관들이 다양한 지원을 완벽하게 제공한다는 것 또한 아직까

지 요원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유관기관들의 전문성을 확보함과 더불어 경찰에서도 장기적 방안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변 보호 등의 분야와 범죄피해자가 요구하는 각종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유관기관을 연계해 주는 중심 기관으로서의 허브 역할에 보다 집중하여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경찰에서는 첫째, 신변보호의 위험성 판단기준을 구체화 시키는 등 신변보호 추진체계를 진단하고, 신변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각 기능별 협조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전문화를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¹⁾ 둘째, 협력네트워크의 중심 기관으로서 경찰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관리해야만 한다는 부담감을 버리고, 경찰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 된 각각 지원분야별 유관기관에 신속히 연계해주는 매개·중계자의 역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범죄피해의 조기 경감에 이바지하는 사업을 적정하고 확실히 실시할 수 있는 단체를 ‘범죄피해자 조기원조 단체’로 지정하여 의무적으로 경찰이 범죄피해자 단체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하여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 및 감독을 전적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범죄피해자 등 급부금 지급법」에 근거하여 경찰에게 범죄피해자의 지원단체를 지정하고 감독권한을 부여한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찰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위기개입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초기 개입자인 경찰에 보다 많은 현장 통제 권한을 부여할 제도적 개선방안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경찰은 다양한 유관기관들과 종합적인 이해가 가능한 연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1) 경찰청은 범죄자로부터 보복 당할 우려 등으로 신변보호가 필요한 범죄피해자·신고자 등의 신변 보호를 위해 원터치 112긴급신고와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손목 착용형 ‘웨어러블 긴급호출기’를 지급, 운용하고 있다. 웨어러블 기기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무선으로 연동해 사용하는 안경이나 손목시계, 밴드형 기기를 일컫는다. ‘착용가능(웨어러블) 긴급호출기’는 위급한 상황 발생 시 긴급호출기의 구조요청(SOS) 단추를 누르면 112신고와 동시에 사전 지정한 보호자 등에게도 긴급 문자메시지와 함께 현재 위치가 실시간 전송된다. 긴급호출기 전화번호는 사전에 112신고시스템에 ‘긴급신변보호대상자’로 등록해 112상황실에서는 구조요청(SOS) 단추 작동 시 신변보호 대상자임을 즉시 인지하여 신속한 출동 지령을 하고, 112신고 시 시스템 상 위치추적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2010년에 범죄피해자의 금전적 이원을 위하여 벌금 전입금 6%의 비율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이 제정되었다. 이에 법무부를 비롯하여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이에 대한 기금을 각각 관련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범죄의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 재판, 수용, 교화 등에는 약 3조원 규모의 재원이 들어가는 반면에, 범죄피해자를 위한 기금은 2015년 현재 약 867억원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순차적으로 벌금에 대한 전입금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겠으며, 더 나아가 이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경찰이 현장 최일선 기구로서 다양한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관련 업무를 중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현재 경찰에게는 임시숙소에 대한 지원사업비인 약 2억 4천만원(0.4%) 정도만이 지급되고 있다.

2015년도 피해자보호기금 운용현황을 살펴보면, 법무부의 전국센터 및 스마일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가 82억 6천만원(15.3%), 보건복지부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가 165억 3천4백만원(30.6%), 여성가족부의 성폭력·가정폭력 지원 단체 운영비가 289억 4천3백만원(53.6%)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불균형한 예산 집행으로 인하여 매우 부족한 재원 속에서 경찰의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의 확대와 피해자 권리고지 의무화 등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업무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범죄피해자를 최일선에서 만나 관련 전문 민간기관에 협력·연계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경찰에게 보다 많은 예산이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제6장 결 론

제1절 시사점

이 연구의 의의는 크게 이론적 의의와 실용적 의의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이론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첫째, 네트워크 분석을 경찰학 및 범죄학 분야에 적용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범죄피해자 보호 관련 연구가 주로 경찰공무원 또는 범죄피해자 등 개인을 대상으로 행태주의적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던 것에 비해 이 연구는 범죄피해자 보호 관련 협력기관의 그 구조를 파악하여 그 이론적 체계를 갖춘 연구를 하였다는 데 있다.

둘째, 범죄피해자 보호에 있어서 협력기관들 간의 협력영역을 개발하였다는 데에 있어서도 그 의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는 단순히 범죄피해자 보호 관련 협력기관의 전반적인 네트워크를 본 것이 아닌, 전반적인 업무와 함께 범죄 유형별 협력 네트워크 영역을 개발하여 각 영역에서의 네트워크를 살펴봄으로써,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실용적 측면에서는 첫째, 범죄피해자 보호 협력에서의 네트워크 구조적 특성을 통해 숨어있는 구조의 패턴을 도출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 내 각 영역별로 어떠한 구조를 나타내는지, 그 구조에서 어느 협력기관이 어느 영역에서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고 있으며, 정보 및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 등을 통하여 그 구조를 면밀히 밝혀냄으로써 효과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할 경찰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그 역할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경찰의 역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 내 범죄피해자 보호 협력기관간 네트워크 구조를 파악하여 그 안에서 경찰

의 위치를 파악함으로써 보다 실용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제2절 연구의 한계

이 연구는 위에서 제시한 학문적·실용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조사대상집단의 한계이다. 이 연구는 범죄피해자 보호 협력기관의 이해관계자의 네트워크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범죄 유형에 따라 12-7개의 관련 이해관계의 대표집단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역 내 네트워크 구조를 대상으로 대표집단을 선정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조사대상 집단의 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이해관계자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져 그 결과를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연구결과 일반화의 한계이다. 이 연구는 사회연결망분석기법을 활용한 사례 연구의 특성이 강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향후 연구에서는 전국 단위의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바탕으로 다른 지역과 비교연구 등을 통하여 이해집단 간의 네트워크의 구조를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분석기법의 한계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연결망분석기법은 특성 상 관계구조를 파악할 수는 있지만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 인과성까지 밝혀 내지는 못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 연구에서 밝혀진 분석결과를 기초로 하여 관계의 특성을 실증적 또는 질적 연구를 통하여 범죄피해자 보호 협력기관들의 네트워크에 대한 일반화된 이론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I. 국내문헌

1. 단행본

- 강동욱 외, 형사소송법 강의, 도서출판 오래, 2013.
- 강석구 외 5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이론과 실무Ⅲ, 법무부, 2011.
- 강은영 외 20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이론과 실무 I, 법무부, 2011.
- 곽기영, 소셜네트워크 분석, 청람, 2014.
- 권기현, 정책학의 논리, 박영사, 2007.
- 권자경, 지방자치단체간 파트너십의 결정요인과 성과에 관한 실증연구: 협력사업의 거래비용, 자원의존, 조직학습,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김계환 외 11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이론과 실무Ⅱ, 법무부, 2011.
- 김용학, 사회연결망분석, 박영사, 2011.
- 김지선, 형사조정사건의 성립을 제고방안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2011.
- 김지선·이동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성과 분석 및 활성화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 김지영·박형민, 강력범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피해실태 사례연구, 법무부인권국, 2009.
- 김호성,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 김효정, 경찰의 강력범죄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김현수,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2011.
- 박준휘·이민호, 강력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사업의 성과평가제도 연구, 법무부, 2013.
- 송기오·강경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 오영근, 형법총론, 박영사, 2014.
- 여성가족부,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 여성가족부, 2015.
- 윤옥경, 유엔 형사사법 핸드북;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 이수상, 네트워크분석 방법론, 부산대학교, 2013.
- 임예윤, 범죄피해자 지원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논문, 2014.
- 장규원 외 3인, 범죄피해자 보호 및 권리강화를 위한 혁신적 제도 연구, 대검찰청, 2013.
- 장연진, 여성복지조직의 네트워크 중심성(centrality)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조운오 외 9인, 피해자학, 도서출판 그린, 2012.
-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 범죄 피해아동 법률조력인제도 시행평가 연구, 법무부, 2013.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폭력피해자 사례분석을 통한 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 황지태 · 노성호, 범죄피해자들의 피해실태 및 피해지원욕구 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2. 논문

- 강경래, “민간 피해자지원조직과 경찰의 협력방안”, 피해자학연구 제14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06.
- 고길곤, “정책네트워크 연구의 유용성과 사회연결망 이론 활용 방법의 고찰”, 행정논총 제45권 제1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7.
- 김근모, “검찰의 범죄피해자 지원활동의 개선방안”, 피해자학연구 제21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13.
- 김상원, “미국의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민간조직의 특성과 현황”, 미국학논집 제13집, 한국아메리카학회, 2011.
- 김성돈,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우호적 형사정책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피해자학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12.

- 김용세, “한국의 회복적 사법”, 법학논집 제15권 제1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 _____, “한국 피해자학의 발전과 과제”, 피해자학연구 제20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12.
- 김재민, “피해자 권리와 실효성 확보에 관한 소고”, 형사정책 제24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2.
- 김창윤, “경찰의 범죄피해자 정책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0권 제1호, 한국범죄심리학회, 2014.
- 김현철, 2010년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중점 추진방향, 제1호 형사사법포럼 자료집, 2010.
- 류기형·류영미·박병현, “지역사회복지서비스 네트워크 활성화에 관한 연구: 부산광역시 동구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11권 제3호,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09.
- 박광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의 실태와 연계강화방안”, 피해자학연구 제17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09.
- 박광섭, “범죄피해자 조례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25권 제1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 박광섭·김혁, “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 지원제도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24권 제1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 박병식, “지방자치단체의 범죄피해자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성균관법학, 제23권 제3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 박상식,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있어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연구 제18권 제3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 박상식, “범죄피해자 보호·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교정복지연구 제3호, 한국교정복지학회, 2006.
- 박영숙, “우리나라 범죄피해자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교정복지연구, 제25권, 한국교정복지학회, 2012.
- 백일홍, “범죄피해자지원에 관한 연구: 지역네트워크 구축방향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 윤지영, “범죄피해자보상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피해자학연구 제21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13.
- 이광호 · 김정희,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조직에서 사회복지사의 관계규범이 신뢰, 관계 결속, 관계 자산,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경영연구 제28권 제4호, 한국산업경영학회, 2013.
- 이재영,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경찰과 민간단체의 협력체제 활성화 방안”, 사회과학연구 제19권 제3호,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2.
- 이재완 · 김승용,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거버넌스 인식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40권,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2012.
- 이종관,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 위원의 서비스 범위와 역할”, 피해자학연구 제18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10.
- 이효원, “범죄피해자의 헌법상 기본권보호”, 서울대학교 법학 제50권 제4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 임국빈, “경찰의 범죄피해자 대책”, 한국피해자학회 정기 학술대회 자료집, 2006.
- 장규원, “학교문제와 회복적 정의모델에 대한 고찰”, 소년보호연구 제26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4.
- 장규원 · 백일홍, “회복적 교정을 통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개선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제21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13.
- 장복희, “국제법상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 법조 제58권 제10호, 법조협회, 2009.
- 정도희, “고소권자로서 피해자의 범위와 역할”, 형사법연구 제22권 제2호, 한국형사법학회, 2010.
- 정홍원 · 최환,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의의와 제3기 계획 수립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사회포럼, 2014.
- 조균석, “형사사법에 있어 범죄피해자대책의 현황과 과제”, 법학논집 제14권 제3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 최 균 · 장영신, “지역복지 네트워크 모델 비교: 평택시 사회복지협의회와 남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회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45권,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2013.

- 최유미·심성지, “네트워크 관리태도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연구: 네트워크 거버넌스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29권,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2009.
- 최재성 외 4인, “지역중심 사회복지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16권 제2호,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14.
- 하지선,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간 네트워크의 내용과 구조적 특성”,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15권 제2호,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13.
- 한관중, “사회과학 방법론으로서의 연결망 분석기법 적용의 의의와 연구과제: 의미의 연결망 분석(segmentic network analysis)을 중심으로”, 사회과교육연구 제10권 제2호, 한국교원대학교 사회과학교육연구소, 2003.
- 한동우, “지역기반의 복지공급체계: 사회복지기관의 역할과 네트워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15권 제3호(통권 제40호),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13.

II. 외국문헌

1. 단행본

- Andrew Karmen, Crime Victims, Wadsworth Cengage Learning, 2010.
- Arlene Bowers Andrews, Victimization and Survivor Services: A Guide to Victim Assistance, Springer Publishing Co., New York, 1992.
- Albert R. Roberts, Helping Crime Victims: Research, Policy and Practice, Sage Publishing, London, 1990.
- Dennis Sullivan and Larry Tifft, Handbook of Restorative Justice; A Global Perspective, Routledge Taylor & Francis Group, London and New York, 2008.
- Elias, R., The Politics of Victimization; Victims, Victimology and human Rights,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1986.
- Elmar G. M. Weitekamp, The history of restorative justice. In Restorative juvenile justice: Repairing the harm of youth crime, ed. Gordon Bazemore and Lode Walgrave, 75-102. With an introduction by Gordon Bazemore and Lode

- Walgrave. Monsey, NY: Criminal Justice Press, 1999.
- Gerry Johnstone, Restorative Justice Ideas, Values, Debates, Willan Publishing, 2002.
- Gerry Johnstone & Daniel W. Van Ness, Handbook of Restorative Justice, Willan Publishing, New York, 2007.
- Gordon Bazemore & Mara Schiff, Restorative Community Justice—Repairing Harm and Transforming Communities—, anderson publishing co., Cincinnati, OH, 2001.
- Heather Strang, Repair or Revenge: Victims and Restorative Justice, Clarendon Press · Oxford, 2002.
- Howard Zehr, The Little Book of Restorative Justice, Good Books, 2002.
- Howard Zehr, Changing Lenses, Herald Press, Scottdale, PA, 2005.
- James Dignan, Understanding Victims and Restorative Justice, Open University Press, 2005.
- Jeremy Travis, Victim Assistance Programs: Whom They Service, What They Offer,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U. S. Department of Justice, 1995.
- Judith M. Sgarzi, Jack McDevitt, Victimology: A Study of Crime Victims and Their Roles, Pearson Education, Inc., 2003.
- Larry J. Siegel, Criminology: Theories, Patterns and Typologies, Thomson, 2008.
- Laura J. Moriarty, Controversies in Victimology, Anderson Publishing Co. 2003.
- Lorraine Wolhuter, Neil Olley and David Denham, Victimization and Victim's Rights, Routledge · Cavendish Taylor & Francis Group, London and New York, 2009.
- Matthew Hall, Victims of Crime: Policy and practice in criminal justice, Willan Publishing, 2009.
- Peggy M. Tobolowsky, Crime Victim Rights and Remedies, Academic Press, Carolina, 2001.
- Peggy M. Tobolowsky, Mario T. Gaboury, Arrick L. Jackson and Ashley G.

Blackburn, Crime Victim Rights and Remedies, Carolina Academic Press, Durham North Carolina, 2010.

Phillips, Victim Support Annual Report and Accounts, Victim Support National Office, 2005.

Robert C. Davis, Arthur J. Lurigio & Susan Herman, Victims of Crime, SAGE Publications, 2006.

2. 논문

Bandes, Susan, "Empathy, Narrative and Victim Impact Statement",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Vol. 63 No. 2, 1996.

Underwood, Thomas, "The Professionalization of Victim Assistance: Implication for the Field of Victim Assistance and Adult Education", Journal of Continuing Higher Education, Vol. 50 No. 2, 2002.

Ⅲ. 기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검찰청 홈페이지(www.spo.g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서울해배라기센터 홈페이지(<http://www.child1375.or.kr>)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http://hhfc.familynet.or.kr>)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korea1391.org)

푸른나무 청예단 홈페이지(<http://www.jikim.net>)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홈페이지(<http://kvcv.or.kr>)

한국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http://www.sisters.or.kr>)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http://womenhotline.or.kr>)

한국여성의 전화 홈페이지(<http://www.hotline.or.kr>)

Wee 홈페이지(<http://kvcv.or.kr>)

『사회연결망분석을 활용한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협력네트워크 개선방안』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조사는 『사회연결망분석을 활용한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협력네트워크 개선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입니다.

이 설문조사는 경찰서와 관내 범죄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간에 구축된 네트워크의 구조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범죄피해자 보호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계신 분들의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귀하의 의견은 귀중한 연구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설문조사에서 제시하신 귀하의 의견은 통계적 분석을 위해서만 사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설문에 참여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년 8월

- 연구책임자 : 정육상 교수(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공동연구자 : 박주상 교수(목포해양대학교 기관·해양경찰학부)
- 연구보조자 : 이미화(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박사과정)

[HP: 010-3339-9859 / E-mail: goodpolice@naver.com]

설문요령 : 각 설문의 항목에 귀하께서 생각하신 기관(업체)을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예 : 코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자체(사회복지과), 해바리기센터, 스마일센터,
법률홍닥터, 법률구조공단, ○○상담소, 학교, ○○병원, ○○쉼터, 자방대,
녹색어머니회, ○○위원회, 여성의 전화, ○○보험회사, 교통사고 기관 등

1. 귀 기관(업체)는 범죄피해자 관련 업무를 **“전반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서 협력관계의 빈도가 가장 높은 기관(업체)의 명칭 5개(소)를 순서대로 기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명					
-----	--	--	--	--	--

2. 귀 기관(업체)는 범죄피해자에게 **“법률·심리적 지원”**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협력관계의 빈도가 가장 높은 기관(업체) 명칭 5개(소)를 순서대로 기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명					
-----	--	--	--	--	--

3. 귀 기관(업체)는 범죄피해자에게 **“신체적 지원”**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협력관계의 빈도가 가장 높은 기관(업체) 명칭 5개(소)를 순서대로 기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명					
-----	--	--	--	--	--

4. 귀 기관(업체)는 범죄피해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협력관계의 빈도가 가장 높은 기관(업체) 명칭 5개(소)를 순서대로 기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명					
-----	--	--	--	--	--